무역제도 II (수입)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

이 정보는 2026년 10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은 국민이 실생활에 필요한 법령을 쉽게 찾아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정보를 국민의 생활중심으로 재분류하여 제공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공된 법령정보는 법적 효력을 갖는 유권해석(결정, 판단)의 근거가 되지 않고, 각종 신고, 불복 청구 등의 증거자료로서의 효력은 없습니다. 구체적인 법령에 대한 질의는 담당기관이나 국민 신문고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데이터 정책에 따라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은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며, 영리 목적의 이용을 포함하여 자유로운 활용이 보장됩니다. 이 경우 출처가 법제처 찾기 쉬운 생활법령(http://www.easylaw.go.kr)임을 명시해 주시고, 단순 인용이 아닌 영리목적의 이용이거나 자료의 상당 부분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을 법제처 법제정보담당관(044-200-6900)으로 통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만,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생활법령 중 제3자가 저작권을 갖는 저작물의 경우에는 원 저작자의 저작권 정책 및 「저작권법」에 따릅니다.

찾기 쉬운 생활법령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위조 · 변조하거나 생활법령에 포함된 제3자의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저작권법」 제136조부터 제138조까지)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무역제도 II (수입)]

수입 승인, 통관, 원산지 표시 및 관세는 국제 무역에서 필수적인 요소로, 수입 시 법령에 따른 규정과 절차를 준수해야 합니다.

이 콘텐츠에서는 수입 시에 각 단계별로 필요한 법령정보를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제공합니다.

무역제도 II (수입) 1
1. 수입승인 등 4
1.1. 수입식품 등의 수입 4
1.1.1. 해외제조업소 및 영업 등록 4
1.1.2.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 등 6
1.2. 주류의 수입 10
1.2.1. 주류 수입업 10
1.3. 의약품 등의 수입 12
1.3.1. 의약품 등의 수입업 12
1.3.2. 의약품 등의 수입 허가 또는 신고 15
1.4. 폐기물의 수입 19
1.4.1.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 19
1.4.2.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입 23
1.5. 전략물자 및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 26
1.5.1. 전략물자의 수입 26
1.5.2.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 27
1.6. 식물 및 야생생물 등의 수입 30
1.6.1. 식물의 수입 30
1.6.2. 야생생물의 수입 34
2. 수입통관 및 원산지 표시 38
2.1. 수입통관 38
2.1.1. 수입신고 38
2.1.2.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물품 검사 40
2.1.3. 수입신고 수리 등 43
2.1.4. 물품 반출 및 반입 명령 45
2.2. 원산지 표시 48
2.2.1.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 48
2.2.2. 수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50
3. 관세 53
3.1. 관세 부과 및 신고 등 53
3.1.1. 관세 부과 53
3.1.2. 과세가격의 신고 55
3.1.3. 과세가격 결정 57
3.2. 관세 납부 60
3.2.1. 납세신고 및 납부 61
3.2.2. 관세 감면 및 환급 64

1. 수입승인 등

1.1. 수입식품 등의 수입

1.1.1. 해외제조업소 및 영업 등록

해외제조업소 등록

등록 신청

▪ 수입식품 등을 국내로 수입하려는 자 또는 해외제조업소의 설치·운영자(이하 “수입자등”이라 함)는 해외제조업소와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을 수입신고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 신청해야 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제1항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2항).

- 해외제조업소의 명칭,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및 해당 국가명
- 생산 품목
- 영업의 종류
- 식품안전에 관한 관리시스템 적용 여부

> ※ “수입식품 등”이란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이하 “식품 등”이라 함),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축산물을 말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1호).
>
> ※ “해외제조업소”란 수입식품 등(축산물은 제외)의 생산·제조·가공·처리·포장·보관 등을 하는 해외에 소재하는 시설(수산물을 생산·가공하는 선박을 포함)을 말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3호).

▪ 해외제조업소의 등록을 신청하려는 자는 해외제조업소 등록신청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에 해외제조업소가 해당 수출국의 식품 등 관련 법령에 따라 허가·등록·신고 등이 되었음을 증명하는 서류[소재지 등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하고, 해당 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외제조업소 등록정보 확인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2서식)로 대신할 수 있음]를 첨부하여 식품안전정보원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자등이 등록을 신청한 사항 중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수입자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제3항).

등록의 유효기간

▪ 해외제조업소 등록의 유효기간은 등록한 날부터 2년으로 하며,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2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5조제6항).

수입중단 조치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해외제조업소의 수입식품 등에 대해 수입중단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제2항).

1. 현지실사(「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9조의2에 따른 비대면 조사를 포함)를 거부, 방해 또는 기피(정당한 사유

없이 응답하지 않는 경우를 포함)하는 경우

2. 현지실사 결과 수입식품 등에서 위해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 ※ “현지실사”란 해외제조업소 또는 해외작업장을 출입 및 검사하는 것을 말하며(「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6호),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출국 정부 또는 해외제조업소와 사전에 협의를 거쳐 해외제조업소 등록 신청을 하였거나 등록된 해외제조업소에 대해 현지실사를 할 수 있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6조제1항).
>
> · 수입식품 등의 위해방지를 위하여 현지실사가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
> · 국내외에서 수집된 수입식품 등의 안전정보에 대한 사실 확인이 필요하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경우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의 등록

영업등록 절차

▪ 수입식품 등을 수입·판매하는 영업(이하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이라 함)을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영업등록을 해야 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

▪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의 영업등록을 하려는 자는 영업에 필요한 시설을 갖춘 후에 다음의 서류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1항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 영업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 포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 교육이수증(「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7조제2항 본문에 따라 미리 교육을 받은 경우만 해당). 다만, 담당 공무원이 전자적 방법으로 교육 이수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
- 시설사용계약서(보관시설을 임차한 경우 또는 여럿이 공유하는 시설 등을 독립된 사무소로 사용하는 경우만 해당함)
- 「국유재산법 시행규칙」 제14조제3항에 따른 국유재산 사용허가서(국유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운영자와 체결한 도시철도시설 사용계약에 관한 서류(도시철도의 정거장시설에서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을 하려는 경우만 해당)

▪ 수입식품 등을 수입·판매하기 위한 영업에 필요한 시설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4조제1항제1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15조제1항 및 별표 7 제1호).

1. 영업활동을 위한 독립된 사무소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영업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사무소를 함께 사용할 수 있으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제2호에 따른 전자상거래·통신판매 형태의 영업을 하여 구매자가 직접 사무소를 방문하지 않는 경우에는 「건축법」에 따른 주택 용도의 건축물을 사무소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수입식품 등을 위생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창고를 갖추어야 합니다. 이 경우 보관창고는 영업등록을 한 소재지와 다른 곳에 설치하거나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3. 위 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입식품 등을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지 않는 경우에는 별도의 보관창고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영업자 준수사항

▪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의 영업자는 수입식품 등의 안전성 확보와 건전한 거래질서 및 국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8에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해야 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8조제1항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5조).

▪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수출국에 제조·가공을 위탁한 수입식품 등(이하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 등"이라 함)을 수입·판매하는 영업자는 다음의 사항을 지켜야 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8조제2항).

-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 등을 제조·가공하는 업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위생점검에 관한 기준에 따라 해외식품 위생평가기관으로 하여금 현지 위생평가 등을 실시해야 함
- 주문자상표부착수입식품 등에 대해 「식품위생법」 제31조에 따른 검사를 실시하고, 그 기록을 2년간 보관해야 함

위반 시 제재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영업등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병과될 수 있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2조제1호).

▪ 다음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병과될 수 있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3조제2호 및 제5호).

- 시설기준을 갖추지 못한 영업자
- 영업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않은 자

1.1.2.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 등

수입식품 등의 수입신고

“수입식품 등”이란?

▪ “수입식품 등”이란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되는 「식품위생법」 제2조에 따른 식품, 식품첨가물, 기구, 용기·포장(이하 “식품 등”이라 함),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강기능식품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축산물을 말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조제1호).

수입신고

▪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 등록을 한 자(이하 “영업자”라 함)가 판매를 목적으로 하거나 영업상 사용할 목적으로 수입식품 등을 수입(수입신고 대행 포함)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 본문).

- 주문자상표부착방식으로 수출국에 제조·가공을 위탁한 수입식품 등을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식품, 식품첨가물, 축산물 및 건강기능식품의 소비기한 설정기준」에 따라 설정한 소비기한의 설정사유서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소비기한을 연장하는 경우도 포함)해야 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9항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9조).

> ※ 위생상 위해발생의 우려가 낮거나 없는 경우 등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에 따른 식품 등은 수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 단서 및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의2).

수입신고 방법

▪ 위에 따라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에 “한글표시가 된 포장지, 사진, 시험·검사성적서 등”의 서류(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통신망을 통하여 수출국 정부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로 확인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함)를 첨부하여 수입식품 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전단).

- 수입신고는 수입식품 등의 도착 예정일 5일 전부터 미리 신고할 수 있으며, 미리 신고한 도착항, 도착 예정일, 반입 장소 및 반입 예정일 등 주요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즉시 그 내용을 문서로 신고해야 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제1항 후단).

▪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가 수입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서식)를 수입식품 등의 통관장소를 관할하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 전단).

-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 대행업자가 수입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통관이 이루어지기 전에 해야 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제2항 후단).

> ※ 수입신고 시 제출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7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 시 금지행위

▪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 또는 수입신고를 한 자는 수입식품 등의 안전과 품질에 대해 책임을 지며,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2항).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신고하는 행위
- 수입신고 내용과 다른 용도로 수입식품 등을 사용하거나 판매하는 행위(다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15조제6항에 따라 영업을 등록한 것으로 보는 영업자가 자사제품의 제조용 원료 또는 외화획득용 원료로 수입신고한 후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용도변경 승인을 받은 경우는 제외)
- 수입검사(「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 결과 부적합 처분을 받아 수출국으로 반송되거나 다른 나라로 반출된 수입식품 등을 재수입하는 행위
- 수입신고 조건(「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 후단)을 위반하는 행위
- 「식품위생법」 제7조,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4조에 따른 기준 및 규격에 위반되는 수입식품 등을 수입신고하는 행위

위반 시 제재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수입신고 시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병과될 수 있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2조제2호 및 제3호).

수입식품 등 수입신고 수리

수입신고 수리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해야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3항).

수입신고 수리 보류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의 검토 과정에서 수입신고된 수입식품 등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수입신고의 수리를 보류(이하 "신고수리보류조치"라 함)할 수 있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4항).

- 테러의 수단으로 사용될 우려가 있는 경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의 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우려가 있는 경우
- 인체에 위해한 물질에 오염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오염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검사항목을 특정하기 어렵거나 정해진 시험방법이 없는 경우
- 국내에 신고·등록 등을 하지 않거나 허가·승인 등을 받지 않은 농약, 동물용 의약품,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물질이 사용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로서 해당 원료 또는 성분에 관하여 정해진 시험방법이 없는 경우
- 그 밖에 해당 수입식품 등으로 인하여 국민건강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신고수리보류조치의 해제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신고수리보류조치된 수입식품 등에 대해 직권으로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나 수입신고한 영업자의 이의 신청에 따라 검토한 결과 그 수입식품 등에 위해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신고수리보류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6항).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신고수리보류조치된 수입식품 등에 대해 이해관계가 있는 국가 또는 수입신고한 영업자가 원인 규명 및 개선사항을 제시한 경우에는 신고수리보류조치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고, 이 경우 개선사항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7항).

수입검사 및 수입신고확인증 발급

수입검사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신고된 수입식품 등에 대해 통관 절차가 끝나기 전에 관계 공무원 또는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3조의 검사관이나 검사기관으로 하여금 필요한 검사를 하게 해야 하며, 이 경우 검사결과의 확인 전이나 위반사항에 대한 보완 전에 사용 또는 판매를 금지하는 등의 조건을 붙여 신고를 수리할 수 있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

> ※ 수입신고 등의 검사방법에 자세한 내용은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9 및 「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제2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확인증 발급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수입신고를 받은 경우(수입식품 등이 자동화된 방식으로 수리할 수 있는 수입신고의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에는 검사방법에 따라 해당 수입식품 등에 대한 검사를 하고, 그 결과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인에게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전자문서 포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또는 인터넷 구매대행 수입식품등의 수입신고확인증(전자문서 포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을 발급해야 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0조).

위반 시 제재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검사 등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3조제6호).

※ 특정 식품 등의 수입·판매 등 금지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서 채취·제조·가공·사용·조리 또는 저장된 식품 등이 그 특정 국가 또는 지역에서 위해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식품 등을 수입·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위해평가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검사 후 식품 등에서 유독·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에는 해당 식품 등의 수입을 금지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 본문).

※ 수입이 금지된 식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수입식품정보마루 홈페이지(https://impfood.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입식품 등의 사후관리

부적합 수입식품 등에 대한 조치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검사결과 부적합한 수입식품 등에 대해 부적합통보서(전자문서를 포함,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별지 제31호서식)를 해당 수입신고인(수입신고인이 수입식품 등 신고 대행업자인 경우 그 대행을 의뢰한 수입식품 등 수입·판매업자 등을 말함) 또는 구매대행 수입신고인에게 각각 발급하고, 수입식품 등 보관업자 및 관할 세관장에게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알려야 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전단).

▪ 이 경우 부적합 통보를 받은 수입신고인 또는 구매대행 수입신고인은 해당 통보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해야 합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후단).

- 수출국으로의 반송 또는 다른 나라로의 반출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료로의 용도 전환(「식품위생법」 제7조의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에 따른 식물성·동물성 원료와 이를 가공한 식품으로서 「사료관리법」에 따라 사료로 사용이 가능한 경우로 한정)
-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식용 외의 공적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

▹ 폐기

유통관리대상 지정·관리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수입신고한 수입식품 등 중 다른 용도로 전환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수입식품 등을 유통관리대상으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습니다(「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

※ 부적합한 수입식품 등의 조치사항 및 유통관리대상 수입식품 등에 자세한 내용은 「수입식품등 신고 및 검사에 관한 규정」 제18조 및 제20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수입이 금지되거나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한 경우 등

- 수입이 금지된 것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채취·제조·수입·가공·사용·조리·저장·소분·운반 또는 진열해서는 안 됩니다(「식품위생법」 제4조제6호).

- 위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다음의 행정 제재가 취해질 수 있습니다.

  · 식품 등을 압류 또는 폐기하게 하거나 용도·처리방법 등을 정하여 영업자에게 위해를 없애는 조치(「식품위생법」 제72조제1항 참조)

  · 식품위생에 관한 위해가 발생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실의 공표(「식품위생법」 제73조제1항제1호 참조)

  ·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수산업법」,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영업(면허)의 허가 또는 영업등록의 취소, 영업 정지, 영업소 폐쇄 등(「식품위생법」 제75조제1항 및 제77조제1항 참조)

  · 영업정지, 영업허가 및 등록의 취소 또는 영업소의 폐쇄명령의 처분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식품위생법」 제83조제1항 참조)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식품위생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위해평가 또는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검사 후 식품 등에서 유독·유해물질이 검출된 경우에는 해당 식품 등의 수입을 금지해야 합니다(「식품위생법」 제21조제1항 본문).

- 위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행정 제재 외에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병과될 수 있습니다(「식품위생법」 제94조제1항제1호).

1.2. 주류의 수입

1.2.1. 주류 수입업

주류 수입업 면허

주류 수입업 면허 요건

▪ 주류를 수입하려는 자는 판매장마다 다음의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제2항제4호 및 별표 3 제4호).

·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무역업고유번호를 받은 자일 것

· 주류(주정 제외)를 수입하려는 경우

√ 창고면적: 22㎡ 이상

√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이 취급하는 신용불량정보 상에 부도, 대출금 연체 등의 사유로 신규여신의 취급을 중단받은 경우에는 그 중단 사유가 해제되었을 것[「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1호나목4)]

※ 주정(공업용 주정은 제외)을 수입하려는 자는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3호나목 및 다목의 요건을 추가로 갖추어야 합니다(「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 제4호).

주류 수입업 면허의 제한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주류 수입업 면허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1. 면허 신청인이 주류 제조면허·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주류 판매업면허가 취소(「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4조 및 제14조의2)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2. 면허 신청인이 주류 제조면허·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주류 판매업면허가 취소된 자(이하 “종전 면허자”라 함)와 면허 신청 당시 「국세기본법」 제2조제20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이하 “특수관계인”이라 함)에 해당하는 자로서 종전 면허자의 면허가 취소된 후 2년이 지나기 전에 같은 장소에서 같은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이 경우 법인인 종전 면허자가 이미 해산한 경우에는 해산 당시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자를 면허 신청 당시 특수관계인으로 봄
3. 면허 신청인이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성년후견인인 경우로서 그 법정대리인이 위 1. 또는 8.부터 11.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4. 면허 신청법인 또는 전환법인의 경우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2로 정하는 임원 중에 위 1. 또는 8.부터 11.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경우
5. 면허 신청인이 위 1. 또는 8.부터 11.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제조장 또는 판매장의 지배인으로 하려는 경우
6. 면허 신청인이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居所)를 두지 않은 경우 그 대리인 또는 지배인이 위 1. 또는 8.부터 11.까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7. 면허 신청인이 신청 당시 국세 또는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8. 면허 신청인이 국세 또는 지방세를 100만원 이상 포탈(逋脫)해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9. 면허 신청인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지 않거나 공급받지 않고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거나 발급받은 행위 등을 해 처벌을 받은 후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10. 면허 신청인이 「조세범 처벌법」 등 일정한 법률을 위반해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 포함)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11. 면허 신청인이 위 10.의 일정한 법률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경우
12. 국세청장이 세수 보전, 주류의 유통·판매 관리 등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해 「주류 판매면허 제한장소 및 제한지역에

관한 지정 고시」에서 지정·고시하는 장소에 면허 신청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판매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13. 면허 신청인이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경우

14. 국세청장이 인구, 주류 소비량 및 판매장의 수 등을 고려하여 주류의 수급(需給) 균형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해 지정·고시한 지역에 면허 신청인이 판매장을 설치하려는 경우

주류 수입업 면허 신청 절차

면허 신청서류

▪ 주류 수입업 면허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3항,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제4호·제5호).

- 주류 판매업면허 신청서(「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 임대차계약서 사본(판매장 또는 사무실 등을 임차하는 경우만 해당)
- 정관,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회의록, 주주 및 임원 명부(법인인 경우만 해당)
- 동업계약서 사본(공동사업인 경우만 해당)
- 무역업고유번호증 사본

면허증의 발급

▪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수입업 면허요건과 면허 신청서류를 갖추어 신청하는 자에게 주류수출입면허증(나)(「주세사무처리규정」 별지 제32호서식)을 발급할 수 있습니다(「주세사무처리규정」 제12조제1항제5호).

※ 주류도 식품에 속하므로, 수입식품의 수입 절차에 따른 해외제조업소 등록, 영업 등록, 수입신고 등을 해야 합니다. 수입식품 등 수입 절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이 콘텐츠의 <수입승인 등-수입식품 등의 수입>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 의약품 등의 수입

1.3.1. 의약품 등의 수입업

의약품 등의 수입업 신고

수입업 신고

▪ 의약품 등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수입업 신고를 해야 합니다(「약사법」 제42조제1항 전단).

※ “의약품 등”이란 다음의 의약품과 의약외품(醫藥外品)을 말합니다(「약사법」 제2조제4호 및 제7호).

- “의약품”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약사법」 제2조제4호).

· 「대한민국약전(大韓民國藥典)」에 실린 물품 중 의약외품이 아닌 것

·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진단·치료·경감(輕減)·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 사람이나 동물의 구조와 기능에 약리학적(藥理學的) 영향을 줄 목적으로 사용하는 물품 중 기구·기계 또는 장치가 아닌 것

- "의약외품"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약사법」 제2조제4호나목 또는 다목에 따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은 제외함)으로서 「의약외품 범위 지정」에 따라 지정된 의약외품을 말합니다(「약사법」 제2조제7호).

·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을 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섬유·고무제품 또는 이와 유사한 것

· 인체에 대한 작용이 약하거나 인체에 직접 작용하지 않으며, 기구 또는 기계가 아닌 것과 이와 유사한 것

· 감염병 예방을 위해 살균·살충 및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되는 제제

수입업 신고 제한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법인의 경우 그 대표자)는 수입업 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약사법」 제42조제4항).

▹ 약사면허 또는 한약사면허의 결격 사유(「약사법」 제5조)에 해당하는 자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하고, 「약사법」 제76조에 따라 영업소가 폐쇄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자

√ 「약사법」 제5조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여 폐쇄된 후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약사(藥事)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한 경우

√ 「약사법」 제5조제2호에 해당하여 폐쇄된 후 가정법원의 성년후견·한정후견 종료의 심판을 받은 경우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

수입 품목허가 신청 및 품목신고

▪ 의약품 등의 수입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업종에 속하는 1개 이상 품목의 수입 품목허가를 동시에 신청하거나 1개 이상 품목을 동시에 수입 품목신고해야 합니다(「약사법」 제42조제1항 전단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6조의2제3항).

의약품 등의 수입업 신고 절차

수입업 신고서류

▪ 의약품등의 수입업 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를 첨부하여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6조의2제1항).

▹ 의약품등 수입업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 「약사법」 제5조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약사법」 제5조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및 「약사법」 제5조제3호에 해당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 「약사법」에 따른 수입관리자 및 안전관리책임자의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또는 수입관리자 승인서(「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지 제44호서식)

수입업 신고수리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위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약사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해야 합니다(「약사법」 제42조제6항).

수입자의 시설 기준

▪ 수입업 신고를 한 자(이하 "수입자"라 함)는 다음의 시설 및 기구를 갖추어야 합니다(「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제6조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제9조).

1. 영업소 및 창고

√ 창고에는 다음의 시설을 두어야 함(다만, ②부터 ⑤까지의 시설은 해당 의약품 등을 취급하는 경우에만 해당함)

① 쥐·해충 등을 막을 수 있는 시설

② 저온 보관 및 빛가림을 위한 시설

③ 생물학적 제제의 보관시설

④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의 보관시설

⑤ 보관방법이 정해진 의약품등의 경우에는 그 보관조건을 유지할 수 있는 시설

2. 시험실과 시험에 필요한 시설 및 기구

√ 「의약품 등의 제조업 및 수입자의 시설기준령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른 시험의 수탁자의 시설 및 기구를 이용하여 시험검사를 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을 따로 두지 않을 수 있음

> ※ 동물용의약품 또는 동물용의약외품의 수입업 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외제조소 등록

▪ 수입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 등을 수입하려면 그 해외제조소(의약품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를 하는 해외에 소재하는 시설을 말함. 이하 같음)에 관한 사항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해야 합니다(「약사법」 제42조제7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제1항).

- 품목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의약품 등
- 「약사법」 제31조의2제4항에 따라 등록된 원료의약품(「약사법」 제42조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로 한정함)
- 「약사법」 제4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의약품 등의 제조를 위하여 수입하는 원료의약품 중 의약품의 주성분으로 사용되거나 주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의약품
- 「약사법」 제4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의약품 등의 제조를 위하여 수입하는 원료의약품 중 의약외품(내용고형제, 내용액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표준제조기준에 맞는 외피용 연고제·카타플라스마제만 해당)의 주성분으로 사용되거나 주성분을 함유하는 원료의약품

▪ 해외제조소에 대한 다음의 사항을 등록하려는 수입자는 해외제조소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지 제57호의2서식)에 해당 해외제조소의 인력·시설·제조·품질관리에 관한 요약 자료(전자문서로 된 자료를 포함하며,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8조제9호 및 제9호의2에 따른

수입품목만 해당)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60조의2제2항).

- 해외제조소의 명칭, 소재지 및 관리자 등에 관한 사항
- 수입품목의 제품명, 종류, 제형, 허가번호 또는 신고수리번호 등에 관한 사항

> ※ 의약품 등의 해외제조소 등록 절차 및 방법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약품등의 해외제조소 등록에 관한 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2. 의약품 등의 수입 허가 또는 신고

의약품 등의 수입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

수입 품목허가·품목신고

▪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이하 "의약품 등"이라 함)의 수입을 업으로 하려는 자는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합니다(「약사법」 제42조제1항 전단).

▪ 다만, 수입업 신고를 한 자(이하 "수입자"라 함)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약품 등에 대해 품목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할 수 있습니다(「약사법」 제42조제2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7조제1항).

1. 국방부장관이 긴급히 군사 목적에 사용하기 위하여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은 의약품 등을 미리 식품의약품안전처장과 품목 및 수량에 대한 협의를 거쳐 수입하려는 경우
2.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장이 희귀의약품 및 희귀질환자 치료용 의약품의 공급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접 수입하는 품목
3.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 기관 및 단체의 요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환자의 치료를 위해 긴급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품목
4. 임상시험계획의 승인을 받은 임상시험용 의약품등(치료목적 사용승인을 받은 임상시험용의약품 또는 국외임상시험용의약품을 포함)
5. 임상시험에 사용되는 원료의약품, 임상시험용 대조약(위약을 포함) 등
6. 의약품등(원료의약품 및 규격품 지정된 한약을 포함)의 제조업자가 자신이 제조하는 의약품등의 원료로 사용하기 위해 직접 수입하는 원료약품
7. 규격품 대상 한약으로 지정된 한약 외의 한약
8. 자가치료용(自家治療用) 및 구호용(救護用) 의약품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의약품 등

> ※ 위 2.부터 6.까지 또는 8.에 해당하는 의약품 등만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업 신고 대상에서 제외합니다(「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7조제2항).

수입 품목허가·품목신고 제한

▪ 수입 품목허가와 품목신고가 제한되는 의약품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1조제1항).

- 각성제·흥분제에 해당하는 제제
- 비타민류와 성호르몬제의 복합제제
- 생약을 원형 그대로 자르거나 파쇄하여 혼합한 형태의 의약품에 해당하는 것
- 해당 업소의 허가취소된 품목과 동일한 품목으로서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것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의약품 등 재평가의 대상으로 공고한 제제로서 그 결과가 공시되지 않은 것
- 국민에게 혐오감을 주거나 국민의 욕구를 자극하여 오·남용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성분이 함유된 제제
- 안전성·유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성분을 함유하는 제제
- 혈장분획제제, 유전자 치료제 등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공익상이나 국제협약상 제조판매·수입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품목
- 국가출하승인의약품, 항생물질과 그 제재, 방사성의약품에 해당하는 의약품을 소분(小分)하는 품목
- 소해면상뇌증 등 국민보건에 위해(危害)가 우려되는 질병의 감염 가능성이 있는 원료를 사용하거나 함유한 것으로서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하는 품목

제품명칭으로 인한 수입 금지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 등의 제품명칭으로는 수입 품목허가를 받거나 품목신고를 할 수 없습니다(「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11조제2항).

- 의약품 등의 명칭으로 적합하지 않거나 다른 제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거나 실제보다 과장된 명칭
- 의약품의 적응증(適應症: 적용대상 질병이나 증상을 말함) 또는 효능·효과를 그대로 표시하는 명칭(진단용 시약 등 특수한 제제는 제외)
- 의약품 중 2종 이상의 유효성분이 혼합된 제제로서 그 성분의 일부만을 나타내는 명칭
- 외국의 상표를 사용하려는 경우 상표권자의 상표사용허가에 관한 관계 증명서류를 첨부하지 않은 의약품등의 명칭
- 「인삼산업법」 및 「식품위생법」에서 정하는 인삼류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명칭

의약품 등의 수입 품목허가 절차

수입 품목허가 신청

▪ 수입 품목신고 대상을 제외한 의약품 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하려는 품목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약사법」 제42조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수입 품목허가 신청서류

▪ 수입 품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약품 동등성의 입증이 필요한 의약품 수입 품목허가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의약외품 수입 품목허가의 경우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을 말함)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

1. 의약품등 수입 품목 허가신청서(「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서식)

2.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자료

3.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

4.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에 관한 시험자료 또는 비교임상시험 성적서에 관한 자료

5. 수입품의 경우 그 품목의 제조 및 판매에 관한 서류

6. 일반의약품 중 단일성분의 의약품으로서 이미 제조판매·수입 품목허가를 받은 정제·캡슐제 또는 좌제와 성분이 동일한 의약품을 허가받으려는 경우에는 비교용출시험자료 등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에서 정하는 자료

7. 의약품 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지 평가에 필요한 자료

8. 신약의 원료의약품 또는 「원료의약품 등록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등록대상 원료의약품을 사용하는 품목의 경우에는 원료의약품에 관한 자료

9. 의약품의 주성분을 제조하는 제조업자의 명칭 및 소재지 등에 관한 자료로서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에서 정하는 자료

10. 의약품을 제조업자에게 위탁·제조해 판매하려는 의약품의 경우 수탁제조업자의 명칭 및 소재지 등을 적어 넣은 위수탁제조계약서

11. 의약품 특허목록에 의약품특허권이 등재된 의약품의 안전성·유효성에 관한 자료를 근거로 의약품의 제조판매·수입 품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특허관계 확인서와 그 사유를 적은 서류 및 근거자료

12. 신약, 희귀의약품, 첨단바이오의약품 및 이미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유효성분의 종류 또는 배합비율이 다른 전문의약품 등(「약사법」 제32조의2제1항)의 경우에는 위해성 관리 계획. 다만, 허가신청서를 제출할 때까지 안전성·유효성 검토항목 등 위해성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확정하지 못하여 위해성 관리 계획을 첨부하기 어려운 경우 위해성 관리 계획 대신 그 개요를 첨부할 수 있음

13. 제조판매품목 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약품임을 증명하는 서류

> ※ 의약품 등의 수입 품목허가 신청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입 품목허가증 발급

▪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또는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의약품 등의 수입품목 허가 또는 품목 조건부 허가를 한 경우에는 의약품등 수입품목 허가 또는 조건부 허가증(「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지 제10호서식)을 발급합니다(「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9조).

의약품 등의 수입품목 신고 절차

수입 품목신고

▪ 다음의 의약품 등을 수입하려는 경우에는 수입하려는 품목마다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합니다(「약사법」 제42조제1항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조제1항).

▸ 대한민국약전 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인정하는 공정서 및 의약품집에 실려 있는 품목(다만, 국내에서 허가되지 않은 품목은 제외)

- 대한민국약전외한약(생약)규격집에 실려 있는 품목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성분의 종류·규격·함량 및 처방 등을 표준화하여 「의약외품 표준제조기준」 또는 「의약품 표준제조기준」에 고시한 표준제조기준에 맞는 품목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따로 기준 및 시험방법을 「의약외품에 관한 기준 및 시험방법」에 고시한 품목
-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신고대상품목으로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에 고시한 의약품등

수입 품목신고서류

▪ 의약품 등의 수입 품목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

1. 수입 품목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 포함)
2. 수입 신고품목임을 입증하는 자료
3. 기준 및 시험방법에 관한 자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2호)
4.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에 관한 시험자료 또는 비교임상시험 성적서에 관한 자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3호)
5. 일반의약품 중 단일성분의 의약품으로서 이미 제조판매·수입 품목허가를 받은 정제·캡슐제 또는 좌제와 성분이 동일한 의약품을 허가받으려는 경우에는 비교용출시험자료 등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에서 정하는 자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5호)
6. 수입품의 경우 그 품목의 제조 및 판매에 관한 서류(「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4호)
7. 의약품 등의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에 적합한지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6호)
8. 신약의 원료의약품 또는 「원료의약품 등록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등록대상 원료의약품을 사용하는 품목의 경우에는 원료의약품에 관한 자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7호)
9. 의약품의 주성분을 제조하는 제조업자의 명칭 및 소재지 등에 관한 자료로서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에서 정하는 자료(「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8호)
10. 의약품을 제조업자에게 위탁제조하여 판매하려는 의약품의 경우에는 수탁제조업자의 명칭 및 소재지 등을 적어 넣은 위탁·수탁제조계약서(「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4조제1항제9호)

> ※ 의약품 등의 수입 품목신고 신청 시 필요한 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조제2항 및 제3항 등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입 품목신고증 발급

▪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의약품 등의 수입품목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의약품등 수입품목 신고증(「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별지 제13호서식)을 발급합니다(「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제59조).

※ 의약품 등의 수입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 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의약품안전나라(의약품통합정보시스템) 홈페이지(https://nedrug.mfds.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동물용의약품 또는 동물용의약외품의 수입 품목허가 또는 품목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 폐기물의 수입

1.4.1.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허가

수입허가 등

▪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 포함)를 받아야 합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 "수출입규제폐기물"이란 「유해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의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이하 "협약"이라 함) 부속서 등에 규정된 폐기물 및 협약 제11조에 따른 양자간·다자간 또는 지역적 협정에서 수출·수입 및 국내 경유의 규제가 필요한 것으로 정하는 물질로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 별지에 따른 품목을 말합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가목 및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항).

▪ 위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방법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처리해야 합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8항).

수입허가 신청서류

▪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1항).

1.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신청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
2.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게 관리한다는 내용과 수입가격이 선적가격(C.I.F.)으로 명시된 수입계약서 또는 주문서 사본
3.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특성과 용도를 표시하는 서류
4. 수출입규제폐기물의 국내 운반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운반하는 경우에만 첨부)
5. 포괄수입(「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6항 전단)의 경우에는 수출입규제폐기물의 통관지세관, 수입예정일 또는 수입예정월별로 수입량이 기재된 포괄수입계획서
6. 보증금예탁서류 또는 보증보험가입서류(포괄수입의 경우에는 위 5.에 따른 포괄수입계획서에 기재된 최초

수입예정월의 수입량에 대한 보증금예탁서류 또는 보증보험가입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다만, 아래 12.에 따라 첨부하는 보험증서 또는 그 밖의 보증서의 보증범위가 더 넓은 경우는 제외)

7.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수수료 납부영수증

8.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운반경로·운반수단·운반업자·운반일정·보관장소·보관일정·재활용 및 처분방법 등이 포함된 처리계획서

9.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의 폐기물처리업 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신고증명서의 사본

10. 수출입규제폐기물에 포함된 유해물질(「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2항)의 정보자료

11.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적용제외 물질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수입폐기물의 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에 관한 고시」에 따른 서류

12. 협약 제6조제11항에 따른 보험증서 또는 그 밖의 보증서

13.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 ※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 변경허가사항 및 신청서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입 허가기준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허가 신청 또는 변경허가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이를 허가할 수 있고, 이 경우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습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 및 제5항).

- 해당 폐기물을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술과 시설을 가지고 있는 경우
- 해당 폐기물이 재활용을 위한 산업의 원료로 사용되는 경우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입허가를 할 때 수출국의 주무관청으로부터 해당 폐기물의 수입 동의 요청이 없는 경우에는 수입을 허가해서는 안 됩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본문).

- 다만, 수출국의 법령에 따라 국가 간 이동 통제 대상 폐기물로 규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수입을 허가할 수 있습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단서).

수입 허가증 발급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출국의 주무관청에 수입동의통지를 한 경우에는 수입허가를 신청한 자에게 지체 없이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4호서식)를 발급해야 합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5항 전단).

▪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입하게 하거나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서 또는 변경허가서를 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제7항).

※ 수입허가를 받지 않거나 거짓으로 허가를 받고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입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호).

수입이동서류의 작성 및 소지

수입이동서류의 작성

▪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허가(변경허가를 포함)를 받은 자는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입하였을 때에는 수입허가를 받은 수출입규제폐기물에 관한 이동서류(이하 "수입이동서류"라 함,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5호서식)를 작성(수입이동서류의 내용을 변경할 때에도 같음)해야 합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1항).

▪ 수입이동서류는 수입하는 수출입규제폐기물이 내국물품으로 되어 보세구역(「관세법」 제156조에 따라 보세구역외 장치의 허가를 받은 장소를 포함) 또는 자유무역지역으로부터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을 반출할 때에 작성해야 합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제2항).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수입이동서류를 작성(변경작성을 포함)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호).

수입이동서류의 소지

▪ 수입허가를 받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해당 수입이동서류 및 수출국의 법령에 따라 발행된 이동서류(수출국의 법령에 따라 국가 간 이동 통제 대상 폐기물로 규정된 경우만 해당)와 수출입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내용을 출력한 서류를 지녀야 하며,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인도하는 경우에는 수입이동서류에 ① 인도일과 ② 운반자의 상호, 사업장 소재지 및 연락처, ③ 운송 수단을 적고 서명해야 합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및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 수입허가를 받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수입이동서류에 적힌 내용을 준수해야 합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수입이동서류에 적힌 내용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4호).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처리

수출입규제폐기물 처리 기준

▪ 수입허가를 받은 자는 그 수입한 폐기물(이하 "수입폐기물"이라 함)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해야 합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제1항).

- 폐기물취급자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수입폐기물의 처리 중 운반을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수입폐기물의 처리 중 운반을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수입폐기물을 처리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5호).

▪ 수입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방법과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수입폐기물을 처리해야 합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제4항).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수입폐기물을 매립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수입폐기물을 처리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수입폐기물을 처리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6호, 제29조의2제2호 및 제32조제1항제2호).

수출입규제폐기물 처리결과 통보

▪ 수입허가를 받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처리를 완료한 자는 그 처리를 완료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령 및 처리결과(「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7호서식)를 수출국의 주무관청과 그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출한 자에게 송부하고, 그 사본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4조 및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수입폐기물의 수령 및 처리 결과를 적은 서류를 수출국의 주무관청과 그 폐기물을 수출한 자에게 보내지 않거나 그 사본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3항제4호).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자의 의무

수출입규제폐기물 인계·인수 내용 등의 입력

▪ 수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입 또는 처리할 때마다 그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이하 “폐기물처리현장정보”라 함)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합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5제1항 및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5).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력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제3호).

보증금 예탁 또는 보험 가입

▪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폐기물의 적정한 수입을 보증하기 위하여 수입허가 이전에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6 및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6).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허가 취소

수입허가 취소 사유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았을 때
- 수입허가에 따른 조건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

- 포괄수입 허가를 받은 자가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입할 때마다 제출해야 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수입하게 하거나 수출입규제폐기물 수입허가서 또는 그 변경허가서를 빌려주었을 때
- 폐기물의 처리 기준·방법에 따라 수출입규제폐기물을 처리하지 않았을 때
- 수입허가를 받은 수출입규제폐기물이 허가 당시 예상하지 못한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새로운 정보가 발견되었을 때
- 수입이동서류를 작성(변경작성을 포함)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였을 때
- 수입이동서류에 적힌 내용을 준수하지 않았을 때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제한을 위반하였을 때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반입명령 등을 위반하였을 때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였을 때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수입허가 취소 이후에도 폐기물을 수입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호의2).

> ※ 수출입규제폐기물의 수입허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올바로 시스템(https://www.allbaro.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4.2.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입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입신고

수입신고

▪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그 폐기물의 종류·양 및 처리계획 등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합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1항).

> ※ “수출입관리폐기물”이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1호의 폐기물 중 수출입규제폐기물 외의 폐기물로서 수출·수입의 관리가 필요한 물질로서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 폐기물의 품목 고시」 별표 2에 따른 품목을 말합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나목 및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항).

▪ 위에 따라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방법에 따라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처리해야 합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6항).

수입신고서류

▪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입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1부씩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2항).

1.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입신고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7호의3서식)

2. 수입가격이 선적가격(C.I.F.)으로 명시된 수입계약서 또는 주문서 사본

3.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운반계약서 사본(위탁하여 운반하는 경우만 첨부)

4.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운반경로·운반수단·운반업자·운반일정·보관장소·보관일정·재활용 및 처분방법 등이 포함된 처리계획서

5.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처리하려는 자의 폐기물처리업허가증 또는 폐기물처리신고증명서 사본

6. 「폐기물관리법」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수탁처리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의 사본(위탁하여 처리하는 경우에만 첨부)

7. 수출입관리폐기물의 분석결과서

8.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9.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적용 범위에서 제외되는 물질의 해당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수입폐기물의 방사성물질 비오염 확인서류에 관한 고시」에 따른 서류

10. 수출입관리폐기물의 통관지 세관, 수입예정일 또는 수입예정월별 수입량이 기재된 수입계획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3항 전단에 따라 신고하는 경우에만 첨부)

11. 보증금예탁서류 또는 보증보험가입서류(「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3항 전단에 따라 수출입관리폐기물을 한꺼번에 신고하는 경우에는 위 10.에 따른 수입계획서에 기재된 최초 수입예정월의 수입량에 대한 보증금예탁서류 또는 보증보험가입서류로 갈음할 수 있음)

수입신고 수리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입신고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신고의 수리 여부를 신고한 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4항).

수입신고증명서 발급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입신고를 받으면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입신고증명서(「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7호의5서식)를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합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4항 및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3항).

▪ 수입신고 또는 그 변경신고를 한 자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입하게 하거나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입신고증명서를 빌려주어서는 안 됩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5항).

※ 수입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제1호).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처리

수출입관리폐기물 처리 기준

▪ 수입신고를 한 자는 그 수입한 폐기물(이하 “수입폐기물”이라 함)을 스스로 처리하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여 처리해야 합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제1항).

▹ 폐기물취급자

-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수입폐기물의 처리 중 운반을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따라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를 받은 자(수입폐기물의 처리 중 운반을 위탁하는 경우만 해당)

▪ 수입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폐기물관리법」 제13조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 기준·방법과 「폐기물관리법」 제13조의2에 따른 폐기물의 재활용 원칙 및 준수사항에 따라 수입폐기물을 처리해야 합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3제4항).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수입폐기물을 매립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수입폐기물을 처리하여 주변 환경을 오염시킨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수입폐기물을 처리한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6호, 제29조의2제2호 및 제32조제1항제2호).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입자의 의무

수출입관리폐기물 인계·인수 내용 등의 입력

▪ 수입신고를 한 자 또는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처리하는 자는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입 또는 처리할 때마다 그 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계량값, 위치정보, 영상정보 등 폐기물 처리 현장정보(이하 “폐기물처리현장정보”라 함)를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에 따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해야 합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5제1항 및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5).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인계·인수에 관한 사항과 폐기물처리현장정보를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거나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입력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의2제3호).

보증금 예탁 또는 보험 가입

▪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폐기물의 적정한 수입을 보증하기 위하여 수입신고 이전에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에 따라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6 및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6).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입신고 수리 취소

수입신고 수리 취소 사유

▪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입신고를 한 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신고 수리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7).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였을 때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3항 후단을 위반하여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나 상호를 사용하여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수출 또는 수입하게 하거나 수출입관리폐기물 수출신고증명서 또는 수입신고증명서를 빌려주었을 때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6항을 위반하여 수출입관리폐기물을 처리하였을 때
- 수출신고·수입신고가 수리된 수출입관리폐기물이 신고 당시 예상하지 못한 환경오염을 유발한다는 새로운 정보가

발견되었을 때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1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
-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였을 때

> ※ 수출입관리폐기물의 수입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올바로 시스템(https://www.allbaro.or.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5. 전략물자 및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

1.5.1. 전략물자의 수입

전략물자

"전략물자"란?

▪ "전략물자"란 국제평화 및 안전유지와 국가안보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국제수출통제체제 또는 이에 준하는 다자간 수출통제 공조(이하 "국제수출통제체제등"이라 함)에 따라 수출허가 등 제한이 필요한 물품 등(「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2조의2에 따른 기술을 포함)을 말합니다(「대외무역법」 제19조 및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2조).

> 1. 바세나르체제(WA)
> 2. 핵공급국그룹(NSG)
> 3. 미사일기술통제체제(MTCR)
> 4. 오스트레일리아그룹(AG)
> 5. 화학무기의 개발·생산·비축·사용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CWC)
> 6. 세균무기(생물무기) 및 독소무기의 개발·생산·비축 금지 및 폐기에 관한 협약(BWC)
> 7. 무기거래조약(ATT)
> 8. 위 1.부터 7.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제수출통제체제에서 논의된 안건에 대해 다수의 회원국이 수출통제 조치를 취하거나 수출통제 조치를 지지하는 등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공조

전략물자의 수입 절차

수입목적확인서 발급 신청

▪ 전략물자를 수입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수입목적 등의 확인을 내용으로 하는 수입목적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법」 제27조 전단).

▪ 이 경우 산업통상부장관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확인 신청 내용이 사실인지 확인한 후 수입목적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법」 제27조 후단).

신청서류

▪ 전략물자 수입목적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자는 전략물자 수입목적확인서 발급신청서에 그 전략물자의 최종사용자 및 사용 목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 전략물자의 수입목적을 확인하는 데에 필요한 서류로서 「전략물자수출입고시」 제61조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대외무역법 시행령」 제47조의2제1항).

수입목적확인서 발급

▪ 전략물자 수입목적확인서 발급 신청을 받은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7일 이내에 전략물자 수입목적확인서를 발급해야 합니다(「대외무역법 시행령」 제47조의2제2항 본문).

▪ 다만, 수입목적 확인을 신청한 물품등에 대해 별도의 기술 심사나 관계 행정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경우 그 기술 심사나 협의를 하는 데에 필요한 기간은 위의 기간에 산입하지 않습니다(「대외무역법 시행령」 제47조의2제2항 단서).

▪ 전략물자 수입목적확인서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합니다(「대외무역법 시행령」 제47조의2제3항).

전략물자의 수입 제한

수입 제한사유

▪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3년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 기간 동안 전략물자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입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법」 제30조).

- 수출허가를 받지 않고 전략물자를 수출하거나 수출신고한 자
- 상황허가를 받지 않고 상황허가 대상인 물품등을 수출하거나 수출신고한 자
- 경유 또는 환적허가를 받지 않고 전략물자를 경유 또는 환적한 자
- 중개허가를 받지 않고 전략물자를 중개한 자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 또는 환적허가 및 중개허가를 받은 자
- 수출허가, 상황허가, 경유 또는 환적허가 및 중개허가를 받았으나 「대외무역법」 제19조의6제1항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이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자
- 「대외무역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이동중지명령을 위반하거나 「대외무역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이동중지조치를 방해한 자

수입 제한 시 조치

▪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위의 경우에 해당하는 자가 있음을 알게 되면 즉시 산업통상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합니다(「대외무역법」 제30조제2항).

▪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전략물자의 수입을 제한한 자와 외국 정부가 자국의 법령에 따라 전략물자의 수입을 제한한 자의 명단과 제한 내용을 공고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법」 제30조제3항).

1.5.2.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

외화획득용 원료·기재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란?

▪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란 다음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조제5호).

▹ 외화획득용 원료: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 용역 및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하 “물품 등”이라 함)을 생산하는 데에 필요한 원자재·부자재·부품 및 구성품

▹ 외화획득용 시설기재(施設機材):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 등을 생산하는 데에 사용되는 시설·기계·장치·부품 및 구성품[물품 등의 하자(瑕疵)를 보수하거나 물품 등을 유지·보수하는 데에 필요한 부품 및 구성품을 포함함]

▹ 외화획득용 제품: 수입 후 또는 국내 구매 후 생산과정을 거치지 않은 상태로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 등

▹ 외화획득용 용역: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 등을 생산하는 데에 필요한 용역

▹ 외화획득용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외화획득에 제공되는 물품 등을 생산하는 데에 필요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

※ “용역”과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란?

- “용역”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역을 말합니다(「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용역(출판업과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을 포함)

· 지식기반용역 등 수출유망산업으로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조제3항에 따른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

· 국내의 법령 또는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저작권·저작인접권·프로그램저작권·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의 양도(讓渡), 전용실시권(專用實施權)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의 허락

-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대외무역법 시행령」 제4조).

1.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2. 부호·문자·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을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자료 또는 정보 등으로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4조에 해당하는 것
3. 위 1.과 2.의 집합체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외화획득용 원료의 범위

▪ 외화획득용 원료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32조).

1. 「대외무역관리규정」 제25조에 따라 수출실적으로 인정되는 수출 물품 등을 생산하는 데에 소요되는 원료(포장재, 1회용 파렛트를 포함)
2. 외화가득율(외화획득액에서 외화획득용 원료의 수입금액을 공제한 금액이 외화획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말함)이 30% 이상인 군납용 물품 등을 생산하는 데에 소요되는 원료
3. 해외에서의 건설 및 용역사업용 원료
4.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1조 각 호에 따른 외화획득용 물품 등을 생산하는 데에 소요되는 원료
5. 위 1.부터 4.까지의 규정에 따른 원료로 생산되어 외화획득이 완료된 물품 등의 하자 및 유지보수용 원료

외화획득용 제품의 범위

▪ 외화획득용 제품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대외무역관리규정」 제59조).

- 주식회사 한국관광용품센타가 수입하는 식자재 및 부대용품
- 「항만운송사업법」에 따라 수입 물품 공급업의 등록을 하고 세관장에 등록한 자(이하 "수입 물품 공급업자"라 함)가 수입하는 선용품
- 군납업자가 수입하는 군납용 물품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승인

▪ 「대외무역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수입승인을 받아야 하는 물품 등을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로 수입하려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대외무역법」 제16조제1항 및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사용목적 변경승인

▪ 원료·기재를 수입한 자는 그 수입한 원료·기재 또는 그 원료·기재로 제조된 물품 등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당초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려면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대외무역법」 제17조제1항 본문 및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0조제2항).

- 우리나라나 교역상대국의 전쟁·사변, 천재지변 또는 제도 변경으로 외화획득의 이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로 생산된 물품 등으로서 그 물품 등을 생산하는 데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여 외화획득의 이행에 앞서 시험제품을 생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외화획득 이행의무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외화획득의 이행을 할 수 없게 된 경우
-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불가항력으로 외화획득의 이행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외화획득의 이행

외화획득 방법

▪ 원료·기재를 수입한 자와 수입을 위탁한 자는 그 수입에 대응하여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라 외화를 획득해야 합니다(「대외무역법」 제16조제3항 본문 및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6조).

- 수출
- 주한 국제연합군이나 그 밖의 외국군 기관에 대한 물품 등의 매도
- 관광
- 용역 및 건설의 해외 진출
- 국내에서 물품 등을 매도하는 것으로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1조에 해당하는 것

※ 수입에 대응하는 외화획득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대외무역법」 제54조제4호).

외화획득 이행기간

▪ 외화획득의 이행기간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의 범위에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9조제1항에 따른 기간으로 합니다(「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 외화획득용 원료·기재를 수입한 자가 직접 외화획득의 이행을 하는 경우: 수입통관일 또는 공급일부터 2년

- 다른 사람으로부터 외화획득용 원료·기재 또는 그 원료·기재로 제조된 물품등을 양수한 자가 외화획득의 이행을 하는 경우: 양수일부터 1년
- 외화획득을 위한 물품 등을 생산하거나 비축하는 데에 2년 이상의 기간이 걸리는 경우: 생산하거나 비축하는 데에 걸리는 기간에 상당하는 기간
- 수출이 완료된 기계류의 하자 및 유지 보수를 위한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인 경우: 하자 및 유지 보수 완료일부터 2년

수입한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사후 관리

외화획득 이행 여부 사후 관리

▪ 산업통상부장관은 승인을 받아 수입한 외화획득용 원료·기재 및 그 원료·기재로 제조된 물품 등에 대해서는 외화획득 이행의무자의 외화획득 이행 여부를 사후 관리해야 합니다(「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8조제1항).

▪ 「대외무역관리규정」 제43조제1항에 따른 기업이 수입승인을 받아 수입한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에 대해서는 자율적으로 사후 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8조제2항 참조).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사후 관리 면제

▪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후 관리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대외무역법 시행령」 제29조).

- 품목별 외화획득 이행 의무의 미이행률이 10% 이하인 경우
- 외화획득 이행의무자의 분기별 미이행률이 10% 이하이고, 그 미이행 금액이 미화 2만 달러에 상당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
- 외화획득 이행의무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외화획득의 이행을 하지 못한 경우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 해당 품목이 수입승인 대상에서 제외됨으로써 그 수입에 대응하는 외화획득의 이행을 할 필요가 없는 경우 등 산업통상부장관이 사후관리를 할 필요성이 없어진 것으로 인정하는 경우

> ※ 그 밖에 외화획득용 원료·기재의 수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6. 식물 및 야생생물 등의 수입

1.6.1. 식물의 수입

수입금지 및 제한 식물 등

수입금지 식물 등

▪ 다음에 해당하는 식물 등(이하 “금지품”이라 함)은 수입하지 못합니다(「식물방역법」 제10조제1항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제2항).

1. 「식물방역법」 제6조에 따른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에 유입될 경우 국내 식물에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병해충이 분포되어 있는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선박, 차량 또는 항공기에 실린 식물이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은 상태로 보관되어 수입 금지 지역을 통과하는 경우는 제외)한 식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식물

①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표 1 각 호에 따른 금지 식물(금지 병해충이 분포하는 금지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식물만 해당)

② 「규제병해충 지정 고시」 별표 1에 따른 금지 병해충이 분포하는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식물

2. 병해충(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병해충위험분석 결과 국내 식물에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병해충은 제외)

3. 흙 또는 흙이 붙어있는 식물

4. 1.부터 3.까지 식물 등의 용기·포장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금지품을 수입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물방역법」 제47조제4호).

수입금지 식물 등의 수입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금지품을 수입할 수 있습니다(「식물방역법」 제10조제2항).

1.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수입 후 관리할 장소를 정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① 시험연구용이나 정부가 인정하는 국제박람회용으로 제공하기 위한 경우

② 「농업유전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업유전자원을 확보하기 위한 경우

2. 위 1.에 따른 식물로서 그 식물에 서식하는 병해충에 대한 위험관리방안을 그 수출국이 제시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그 타당성에 대해 병해충위험분석을 한 결과 국내 식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한 식물의 경우

3. 위 1.에 따른 식물 중 제한된 장소에서 관리할 경우 병해충을 국내에 비산(飛散)·전파할 우려가 없는 것으로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른 식물을 다시 포장·가공하여 수출할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로서 「식물방역법 시행령」 제3조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부터 포장·가공 장소(이하 “포장·가공장소”라 함) 및 수입기간을 정하여 허가를 받은 경우

수입된 식물 등의 관리

▪ 누구든지 위 1. 또는 3.에 따라 허가를 받아 수입된 금지품을 해당 관리장소 또는 포장·가공장소 밖으로 유출하거나 반출해서는 안 됩니다(「식물방역법」 제10조제4항).

※ 금지품을 관리장소 또는 포장·가공장소 밖으로 유출하거나 반출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물방역법」 제47조제4호의2).

▪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금지품을 관리장소 또는 포장·가공장소 밖으로 유출하거나 반출한 자에게 다음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식물방역법」 제10조제5항).

▹ 위 1. 또는 3.에 따른 허가의 취소

▹ 2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 1. 또는 3.에 따른 허가의 제한

▪ 식물검역관은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금지품을 관리장소 또는 포장·가공장소 밖으로 유출하거나 반출한 자에 대해 금지품의 회수 및 폐기를 명할 수 있고, 이 경우 금지품으로 인한 병해충의 오염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및 그 주변 지역에 대한 소독을 명할 수 있습니다(「식물방역법」 제10조제6항).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회수 및 폐기 명령이나 소독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물방역법」 제47조제4호의3).

※ 식물 등 수입제한 조치

Q. 해외 일부지역에서 우리나라의 금지 병해충이 발생했다고 해요. 해당 지역의 식물을 수입하려고 준비 중이었는데, 수입이 가능한가요?

A. 외국의 특정지역에서 규제병해충이 발생하여 국내에 유입될 우려가 있는 등 병해충의 관리상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면 그 지역에서 생산 또는 발송되었거나 그 지역을 경유한 식물 등의 수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식물방역법」 제11조제1항).

여기서 "규제병해충"이란 소독·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할 경우 식물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크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검역병해충[국내에 분포되어 있지 않거나 국내의 일부 지역에 분포되어 있지만 발생예찰(發生豫察) 등 조치를 취하고 있는 병해충] 및 규제비검역병해충(검역병해충이 아닌 병해충 중에서 재식용(栽植用) 식물에 대하여 경제적으로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해를 끼쳐 국내에서 규제되는 병해충)을 말합니다(「식물방역법」 제2조제4호).

현재 긴급수입제한조치된 식물 등에 대한 정보는 <농림축산검역본부 홈페이지(https://www.qia.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수입

수입식물검역증명서의 전송 등

- 식물 등을 수입하려는 자는 식물검역증명서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전송해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8조제1항).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검역증명서를 첨부·전송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식물방역법」 제8조제3항).
  - 식물 검역에 관한 정부기관이 없는 국가로부터 수입하는 경우
  - 휴대하거나 우편·탁송 또는 이사물품으로 수입하는 경우
  - 그 밖에 검역증명서를 첨부·전송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로서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0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검역증명서를 첨부·전송하지 않고 식물 등을 수입한 자 또는 검역증명서를 위조·변조하거나 그 증명서가 위조·변조되었음을 알고도 이를 사용하여 식물 등을 수입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물방역법」 제47조제2호).

※ 수입식물검역증명서의 첨부·전송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입식물검역증명서의 기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 및 검역

-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는 처음으로 도착한 수입항에서 지체 없이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아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12조제1항).
- 「식물방역법」 제7조에 따른 수송기준을 준수하여 운송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도착지에서 지체 없이 식물검역기관의 장에게 신고하고 식물검역관의 검역을 받을 수 있습니다(「식물방역법」 제12조제2항).

- 식물검역대상물품을 내륙 컨테이너 기지로 운송(재식용 또는 번식용 식물이 아닌 것만 해당)하거나 해상 또는 항공으로 운송하는 경우
- 정부가 인정하는 국제박람회용으로 제공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을 국제박람회장으로 운송하는 경우
-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식물방역법」 제7조의3제2항제2호에 따른 검역장소로 운송하는 경우
- 식물검역대상물품 중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서류에 의한 검역 대상으로 고시한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식물방역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검역장소로 운송하는 경우

> ※ "식물검역대상물품"이란 식물과 그 식물을 넣거나 싸는 용기·포장, 병해충 및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식물방역법」 제2조제3호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
> · 암석 등이 풍화(風化)되어 분해된 것으로서 유기질이 혼입(混入)된 지구표면의 혼합물
>
> · 유기물이 분해 또는 부식(腐植)된 것으로서 식물의 재배에 이용되는 물질

▪ 수입 신고 및 검역 신청을 하려는 자는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실은 선박, 차량 또는 항공기가 수입항에 도착하면 지체 없이 다음의 서류를 그 수입항을 관할하는 검역본부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라 함)에게 제출(정보통신망을 통한 제출을 포함)해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 식물검역대상물품 수입신고 및 검역신청서(「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 수출국 식물검역증명서 또는 전자식물검역증명서(「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10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수입허가증명서(금지품인 경우만 첨부)
- 수출(입) 검역 대상 식물명세서(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만 첨부,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거짓으로 한 자 또는 검역을 받지 않고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수입하였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검역을 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식물방역법」 제47조제6호).

검역합격증명서 발급

▪ 식물검역관은 「식물방역법」 제12조에 따른 검역 결과 「식물방역법」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위반되지 않고, 규제병해충 및 잠정규제병해충이 붙어 있지 않다고 인정되거나 소독처리되어 경제적 피해를 줄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식물검역대상물품에 대해서는 합격으로 처리하고 그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에 통보해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17조제1항 전단).

▪ 이 경우 수입하는 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수입 식물 검역합격증명서(「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를 발급해야 합니다(「식물방역법」 제17조제1항 후단 및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9조 본문).

- 다만, 우편, 탁송품 또는 이사물품으로 수입하거나 휴대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는 합격증인(「식물방역법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으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식물방역법 시행규칙」 제29조 단서).

1.6.2. 야생생물의 수입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수입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란?

▪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의 종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종을 말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 해당하는 종

▹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어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않을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제2항에 해당하는 종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수입금지

▪ 누구든지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수입(죽은 것을 포함)해서는 안 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 "멸종위기 야생생물"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생물의 종으로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종을 말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어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생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제1항에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가목)

▹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 자연적 또는 인위적 위협요인으로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어 현재의 위협요인이 제거되거나 완화되지 않을 경우 가까운 장래에 멸종위기에 처할 우려가 있는 야생생물로서 「야생생물로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의2제2항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종(「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나목)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수입허가

▪ 위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수입할 수 있습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단서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 학술 연구 또는 멸종위기 야생생물의 보호·증식 및 복원의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등록된 생물자원 보전시설이나 「생물자원관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생물자원관에서 전시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 또는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 등을 받은 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이동시키거나 이식하여 보호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

▹ 사람이나 동물의 질병 진단·치료 또는 예방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요청하는 경우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 따라 인공증식한 것을 수입하는 경우

▹ 멸종위기 야생생물로 인한 인명·가축 또는 농작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멸종위기 야생생물을 이동시키거나 이식하여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멸종위기 야생생물 Ⅰ급을 수입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멸종위기 야생생물 Ⅱ급을 수입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제3호 및 제69조제1항제2호).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입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란?

▪ "국제적 멸종위기종"이란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이하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이라 함)에 따라 국제거래가 규제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물로서 「국제적멸종위기종 목록」 별표에 따른 종을 말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

▹ 멸종위기에 처한 종 중 국제거래로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종으로서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 Ⅰ에서 정한 것

▹ 현재 멸종위기에 처하여 있지는 않으나 국제거래를 엄격하게 규제하지 않을 경우 멸종위기에 처할 수 있는 종과 멸종위기에 처한 종의 거래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하여 규제를 해야 하는 그 밖의 종으로서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 Ⅱ에서 정한 것

▹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당사국이 이용을 제한할 목적으로 자기 나라의 관할권에서 규제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확인하고 국제거래 규제를 위하여 다른 당사국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종으로서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 Ⅲ에서 정한 것

국제적 멸종위기종의 수입허가

▪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의 허가기준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본문).

▹ 멸종위기종국제거래협약의 부속서(Ⅰ·Ⅱ·Ⅲ)에 포함되어 있는 종에 따른 거래의 규제에 적합할 것

▹ 생물의 수입이 그 종의 생존에 위협을 주지 않을 것

▹ 그 밖에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허가조건을 충족할 것

▪ 다만, 국제적 멸종위기종을 이용한 가공품으로서 「약사법」에 따른 수입 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의 경우에는 허가가 필요하지 않습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 단서).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입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제5호).

▪ 허가를 받아 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은 그 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3항 본문).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국제적 멸종위기종 및 그 가공품을 수입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9조제1항제4호).

야생생물의 수입

야생생물의 수입허가

▪ 멸종위기 야생생물에 해당하지 않는 야생생물 중 생물종을 보호하고 생물다양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종(가공품을 포함)을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의 구분에 따른 허가기준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2호).

1. 야생생물의 수입이 그 종의 생존을 어렵게 하지 않을 것
2. 살아 있는 야생생물을 수령하기로 예정된 자가 그 야생생물을 수용하고 보호할 적절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야생동물 질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가축전염병의 매개 및 전파의 우려가 없을 것
4. 학술 연구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야생생물 관련 학과가 설치된 고등학교 이상의 학교 또는 야생생물 관련 연구기관이 그 야생생물을 이용한 학술연구계획을 확정하고 그 필요 예산 및 시설 등을 확보하고 있을 것
5. 관람용으로 수입하는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인가·허가·승인 등을 받아 운영하는 공원·관광지·동물원·박물관 등의 시설에서 일반 공중의 관람에 제공할 것
6. 외국에서 판매를 목적으로 인공 사육 또는 재배된 야생생물로서 번식·판매의 목적으로 수입하는 경우: 수출국의 정부기관 등이 발행하는 인공 사육 또는 재배 증명서를 첨부하고, 해당 야생생물의 인공 사육 또는 재배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7. 위 4.부터 6.까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야생생물의 수입이 국내생태계를 교란할 우려가 없고, 야생생물 종의 생존에 영향이 없을 것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허가 없이 야생생물을 수입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제8호).

수입허가의 면제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받지 않고 수입할 수 있습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제2항).

- 천연기념물에 대해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경우
- 야생생물을 이용한 가공품으로서 「약사법」 제42조에 따른 수입허가를 받은 의약품

지정검역물의 수입

“지정검역물”이란?

▪ “지정검역물”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23조에 따른 지정검역물은 제외)을 말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14,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15 및 「지정검역물의 범위 및 검역 방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제3조).

- 야생동물(포유류, 조류, 파충류에 한정)과 그 사체
- 야생동물 질병에 대한 진단액류(診斷液類)(해당 진단액류에 병원체가 들어있는 경우로 한정)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15제1호에 따른 야생동물 또는 그 사체에서 유래한 뼈·살·가죽·알·혈액
- 지정검역물을 넣은 용기 또는 포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물건

수입을 위한 검역증명서 첨부

▪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서류로서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을 확산시킬 우려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해야 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17제1항).

지정검역물의 수입검역

▪ 지정검역물을 수입하려는 자는 야생동물검역기관의 장에게 검역을 신청하고 야생동물검역관의 검역(이하 "수입검역"이라 함)을 받아야 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18제1항 본문).

▪ 수입검역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국립야생동물질병관리원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19제1항).

- 야생동물 수입검역신청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9서식)
- 지정검역물의 운송에 관한 선하증권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사본
- 검역증명서(검역증명서의 첨부가 면제된 경우는 제외)
  - √ 검역증명서; 수출국의 정부기관이 발행하는 서류로서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을 확산시킬 우려가 없음을 증명하는 서류(「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17제1항 본문)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16제3항에 따른 수입허가 증명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15제1항 단서에 따른 허가를 받은 경우만 해당)
- 야생동물의 수입과 관련된 다음의 서류의 사본(해당 야생동물을 수입한 경우만 해당)
  - √ 멸종위기 야생생물 수입·반입 허가증(「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 √ 인공증식한 멸종위기 야생생물 수입·반입 허가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 √ 국제적 멸종위기종 수입등 허가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 √ 야생생물 수입·반입 허가증(「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18제3호에 따라 반송되어 수입되는 야생동물 또는 물건인 경우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수입검역을 받지 않거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검역을 받은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8조제1항제12호).

수입검역증명서의 발급

▪ 야생동물검역관은 수입검역의 결과 지정검역물이 야생동물 검역대상질병을 확산시킬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입검역증명서(「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0호의11서식)를 발급해야 합니다(「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의20 본문 및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22 전단).

2. 수입통관 및 원산지 표시

2.1. 수입통관

2.1.1. 수입신고

※ “수입통관”이란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을 세관장에게 신고하고, 세관장은 관세법 및 그 밖의 법령에 따라 적법하고 정당하게 이루어진 경우에 이를 신고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수입신고필증을 교부하여 수입물품이 반출될 수 있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을 말합니다(관세청 홈페이지 참조).

수입의 신고

신고사항

▪ 물품을 수입하려면 다음의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관세법」 제241조제1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246조제1항).

-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
- 포장의 종류·번호 및 개수
- 목적지·원산지 및 선적지
- 원산지표시 대상물품인 경우에는 표시유무·방법 및 형태
- 상표
- 납세의무자 또는 화주의 상호(개인의 경우 성명을 말함)·사업자등록번호·통관고유부호와 해외공급자부호
- 물품의 장치장소
- 그 밖의 참고사항

※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 생략 및 간소화

Q.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도 수입신고를 해야 하나요?

A. 물품을 수입하려면 세관장에게 수입신고를 해야 하지만, 종교용품, 자선용품, 정부용품 등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은 수입신고를 생략하거나 간소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241조제2항 참조).

수입신고의 생략 또는 간소화가 가능한 물품은 다음과 같습니다(「관세법」 제241조제2항).

· 휴대품·탁송품 또는 별송품

· 우편물

· 「관세법」 제91조부터 제94조까지, 「관세법」 제96조제1항 및 제97조제1항에 따라 관세가 면제되는 물품

· 「관세법」 제135조, 제136조, 제149조 및 제150조에 따른 보고 또는 허가의 대상이 되는 운송수단

· 국제운송을 위한 컨테이너(「관세법」 별표의 관세율표 중 기본세율이 무세인 것으로 한정)

신고시기

▪ 수입신고는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된 후에만 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243조제2항).

▪ 수입하려는 물품을 지정장치장 또는 보세창고에 반입하거나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한 자는 그 반입일 또는 장치일부터 3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관세법」 제241조제3항).

입항 전 수입신고

▪ 수입하려는 물품의 신속한 통관이 필요할 때에는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가 입항하기 전에 수입신고를 할 수 있고, 이 경우 입항 전 수입신고가 된 물품은 우리나라에 도착한 것으로 봅니다(「관세법」 제244조제1항).

▪ 입항 전 수입신고는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 또는 항공기가 그 물품을 적재한 항구 또는 공항에서 출항하여 우리나라에 입항하기 5일전(항공기의 경우 1일전)부터 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249조제1항).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은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 등이 우리나라에 도착된 후에 수입신고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249조제3항).

√ 세율이 인상되거나 새로운 수입요건을 갖추도록 요구하는 법령이 적용되거나 적용될 예정인 물품

√ 수입신고하는 때와 우리나라에 도착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수량이 달라지는 물품으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 세관장은 입항 전 수입신고를 한 물품에 대해 물품검사의 실시를 결정하였을 때에는 수입신고를 한 자에게 이를 통보해야 하며, 검사대상으로 결정되지 않은 물품은 입항 전에 그 수입신고를 수리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244조제2항 및 제4항).

▸ 검사대상으로 결정된 물품은 수입신고를 한 세관의 관할 보세구역(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하는 경우 그 장소를 포함)에 반입되어야 하지만, 세관장이 적재상태에서 검사가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물품은 해당 물품을 적재한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검사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244조제3항).

수입신고 방법

신고인

▪ 수입신고는 화주 또는 관세사 등의 명의로 해야 합니다(「관세법」 제242조 본문).

신고 시 제출서류

▪ 수입신고를 하는 자는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관세법」 제245조제1항, 「관세법 시행령」 제250조제1항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77조의6제3항).

▸ 수입신고서(「관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의3서식)

▸ 과세가격결정자료

▸ 선하증권 사본 또는 항공화물운송장 사본

▸ 원산지증명서(「관세법 시행령」 제236조제1항이 적용되는 경우로 한정)

▸ 그 밖의 참고서류

▪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자가 해당 서류를 관세사 등에게 제출하고, 관세사 등이 해당 서류를 확인한 후 수입신고를 할 때에는 해당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하거나 해당 서류를 수입신고 수리 후에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245조제2항).

- 위에 따라 서류의 제출을 생략하게 하거나 수입신고 수리 후에 서류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 세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신고인에게 관세청장이 정하는 장부나 그 밖의 관계 자료의 제시 또는 제출을 요청하면 신고인은 이에 따라야 합니다(「관세법」 제245조제3항).

위반 시 제재

밀수입죄

-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관세액의 10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관세법」 제269조제2항).

  -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물품을 수입한 자(다만, 「관세법」 제253조제1항에 따른 반출신고를 한 자 제외)

  - 수입신고를 했으나 해당 수입물품과 다른 물품으로 신고해 수입한 자

가격조작죄

- 수입신고를 할 때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물품의 가격을 조작하여 신고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물품원가, 신고한 물품가격과 과세가격 간의 차액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관세법」 제270조의2).

허위신고죄

- 수입신고를 할 때 신고사항(「관세법」 제241조제1항)을 신고하지 않거나 허위신고를 한 자는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관세법」 제276조제2항제4호).

관세포탈죄

- 수입신고를 한 자(「관세법」 제19조제5항제1호다목에 따른 구매대행업자를 포함)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관세법」 제270조제1항).

  -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과세가격 또는 관세율 등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신고하지 않고 수입한 자(「관세법」 제19조제5항제1호다목에 따른 구매대행업자를 포함)

  -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거짓으로 서류를 갖추어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및 재심사를 신청한 자

  - 법령에 따라 수입이 제한된 사항을 회피할 목적으로 부분품으로 수입하거나 주요 특성을 갖춘 미완성·불완전한 물품이나 완제품을 부분품으로 분할해 수입한 자

그 밖의 처벌

- 수입신고를 한 자 중 법령에 따라 수입에 필요한 허가·승인·추천·증명 또는 그 밖의 조건을 갖추지 않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관세법」 제270조제2항).

2.1.2. 품목분류 사전심사 및 물품 검사

품목분류 사전심사

사전심사 신청

-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해당 물품에 적용될 「관세법」 별표에 따른 관세율표 또는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에 따른 품목분류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86조제1항).

사전심사 신청서류

▪ 특정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의 사전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관세청장에게 다음의 서류 및 물품을 제출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 본문).

1. 물품의 품명·규격·제조과정·원산지·용도·통관예정세관 및 신청사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
2. 신청대상물품의 견본
3. 그 밖의 설명자료

▪ 다만, 관세청장은 물품의 성질상 견본을 제출하기 곤란한 물품으로서 견본이 없어도 품목분류 심사에 지장이 없고, 해당 물품의 통관 시에 세관장이 이를 확인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 2.에 따른 견본의 제출을 생략하게 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106조제1항 단서).

※ 세액결정에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거짓으로 서류를 갖추어 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한 관세액의 5배와 물품원가 중 높은 금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해집니다(「관세법」 제270조제1항제2호).

심사결과 통지 및 고시 등

▪ 사전심사의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를 심사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106조 제4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관세법」 제86조제2항 본문).

▪ 관세청장은 위에 따라 품목분류를 심사한 물품에 대해서는 해당 물품에 적용될 품목분류와 품명, 용도, 규격,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 또는 공표해야 합니다(「관세법」 제86조제4항 본문).

> ※ 품목분류를 변경한 물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출입물품 등에 대한 품목분류 변경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품목분류 적용

▪ 세관장은 수입신고가 된 물품이 위에 따라 통지한 물품과 같을 때에는 그 통지 내용에 따라 품목분류를 적용해야 합니다(「관세법」 제86조제5항).

수입물품 검사 방법

물품에 대한 검사

▪ 세관공무원은 수입하려는 물품에 대해 검사를 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246조제1항).

> ※ 물품검사의 방법·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

▪ 관세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요청을 받아 세관장으로 하여금 세관장의 확인이 필요한 수출입물품 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물품의 성분·품질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이하 “안전성 검사”라 함)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246조의3제1항 본문).

▪ 관세청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안전성 검사 요청을 받거나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안전성 검사를 요청한 경우 해당 안전성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및 설비 등을 고려하여 안전성 검사 대상 물품을 지정해야 하고, 그 결과를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합니다(「관세법」 제246조의3제3항).

▪ 세관장은 위에 따라 안전성 검사 대상 물품으로 지정된 물품에 대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력하여 안전성 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관세법」 제246조의3제5항).

▪ 관세청장은 안전성 검사 결과 불법·불량·유해 물품으로 확인된 물품의 정보를 관세청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246조의3제6항).

> ※ 안전성 검사의 방법·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세법 제246조의3에 따른 안전성 검사 업무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검사장소

▪ 안정성 검사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을 제외하고는 보세구역에서 합니다(「관세법」 제247조제1항 및 제155조제1항).

- 크기 또는 무게의 과다나 그 밖의 사유로 보세구역에 장치하기 곤란하거나 부적당한 물품
- 재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임시로 장치한 물품
- 검역물품
- 압수물품
- 우편물품

> **※ 물품검사에 따른 손실보상**
>
> Q. 외국에서 전자제품을 수입하려고 수입신고를 한 후에 관세청으로부터 검사를 받게 됐어요. 그런데 검사 중에 수입하려는 물품이 파손됐어요. 이런 경우 어떻게 되나요?
>
> A.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검사로 인하여 물품 등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손실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246조의2제1항).
>
> 손실보상의 대상은 세관공무원의 적법한 물품검사로 손실이 발생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251조의2제1항).
>
> 1. 검사 대상 물품
> 2. 위 1.의 물품을 포장한 용기 또는 운반·운송하는 수단
>
> 손실보상의 금액은 다음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251조의2제2항).
>
> 가. 해당 물품 등을 수리할 수 없는 경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금액
>
> ① 위 1.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에 상당하는 금액(다만, 과세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구매가격 및 손실을 입은 자가 청구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인정하는

금액으로 함)

② 위 2.에 해당하는 경우: 구매가격 및 손실을 입은 자가 청구하는 금액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합리적인 범위에서 인정하는 금액

나. 해당 물품 등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다만, 위 가.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함)

2.1.3. 수입신고 수리 등

수입신고 수리 및 담보 제공

수입신고 수리

▪ 세관장은 수입신고가 「관세법」에 따라 적합하게 이루어졌을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발급해야 합니다(「관세법」 제248조제1항 본문).

▹ 다만, 「관세법」 제327조제2항에 따라 국가관세종합정보시스템의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인(신고 명의인이 화주가 아닌 경우에는 화주를 포함)이 직접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신고필증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248조제1항 단서).

※ 「관세법」에 따른 전자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사항의 보완

▪ 세관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까지 갖추어지지 않은 사항을 보완하게 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249조 본문).

▹ 수입신고서의 기재사항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 수입신고 시 제출서류가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 다만, 해당 사항이 경미하고 신고수리 후에 보완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수리 후 이를 보완하게 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249조 단서).

담보의 제공

▪ 관세를 납부해야 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수입신고를 수리할 때에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248조제2항).

▹ 「관세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를 위반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 면제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 「관세법」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3조를 위반하여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관세법」 제269조부터 제271조까지, 제274조, 제275조의2, 제275조의3 또는 「수출용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제23조에 따라 벌금형 또는 통고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통고처분을 이행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자

- 「관세법」 제241조 또는 제244조에 따른 수입신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간 관세 등 조세를 체납한 사실이 있는 자
- 수입실적, 수입물품의 관세율 등을 고려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252조에서 정하는 관세채권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에 해당하는 자

> ※ 납세담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세법」 제24조부터 제26조의2까지 또는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6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 취하 및 각하

수입신고의 취하

- 수입신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만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 취하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250조제1항 본문).
  - 다만, 수입신고는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관세법」에 규정된 장치 장소에서 물품을 반출한 후에는 취하할 수 없습니다(「관세법」 제250조제1항 단서).
-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수입신고의 취하를 승인한 때에는 신고수리의 효력이 상실됩니다(「관세법」 제250조제2항).

수입신고의 각하

- 세관장은 수입신고가 그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되었을 때에는 해당 수입신고를 각하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250조제3항).

통관 보류

통관 보류사유

- 세관장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237조제1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244조).
  - 수입신고서의 기재사항에 보완이 필요한 경우
  - 수입신고 시 제출서류 등이 갖추어지지 않아 보완이 필요한 경우
  - 「관세법」에 따른 의무사항(대한민국이 체결한 조약 및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를 포함)을 위반하거나 국민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 「관세법」 제24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가 필요한 경우
  - 「관세법」 제246조의3제1항에 따른 안전성 검사 결과 불법·불량·유해 물품으로 확인된 경우
  - 「국세징수법」 제30조 및 「지방세징수법」 제39조의2에 따라 세관장에게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위탁된 해당 체납자가 수입하는 경우
  - 관세 관계 법령을 위반한 혐의로 고발되거나 조사를 받는 경우
  - 수출입 관계 법령에 따른 일시적 통관 제한·금지 또는 이에 따른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일시적 통관 제한·금지 요청이 있어 세관장이 그 해당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통관 보류통지 및 해제

▪ 세관장은 위에 따라 통관을 보류할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화주(화주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 또는 수출입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합니다(「관세법」 제237조제2항).

▹ 세관장은 위에 따라 통지할 때에는 이행기간을 정하여 통관의 보류 해제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237조제3항).

▪ 통관의 보류 사실을 통지받은 자는 세관장에게 통관 보류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소명하는 자료 또는 세관장의 통관 보류 해제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한 사실을 증명하는 자료를 제출하고 해당 물품의 통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237조제4항 전단).

▹ 이 경우 세관장은 해당 물품의 통관 허용 여부(허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포함)를 요청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해야 합니다(「관세법」 제237조제4항 후단).

> ※ 통관 보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26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관 제한

원산지 허위표시물품 등의 통관 제한

▪ 세관장은 법령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물품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통관을 허용해서는 안 되며, 위반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이를 보완·정정하도록 한 후 통관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230조).

▹ 원산지 표시가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과 방법에 부합되지 않게 표시된 경우

▹ 원산지 표시가 부정한 방법으로 사실과 다르게 표시된 경우

▹ 원산지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

품질 등 허위·오인 표시물품의 통관 제한

▪ 세관장은 물품의 품질, 내용, 제조 방법, 용도, 수량(이하 “품질 등”이라 함)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한 물품 또는 품질 등을 오인(誤認)할 수 있도록 표시하거나 오인할 수 있는 표지를 붙인 물품으로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산업표준화법」 등 품질등의 표시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물품에 대해서는 통관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관세법」 제230조의2).

2.1.4. 물품 반출 및 반입 명령

물품 반출

수입신고 후 물품 반출

▪ 수입신고 수리 전에는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관세법」에 따른 장치 장소로부터 신고된 물품을 반출해서는 안 됩니다(「관세법」 제248조제3항).

※ 위의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관세법」 제276조제2항제5호).

수입신고 수리 전 물품 반출

▪ 수입신고를 한 물품을 세관장의 수리 전에 해당 물품이 장치된 장소로부터 반출하려는 자는 납부해야 할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세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관세법」 제252조 본문).

▪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담보의 제공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252조 단서 및 「관세법 시행령」 제256조제3항 본문).

1.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지방공기업법」 제49조 및 제79조)이 수입하는 물품
2. 「관세법」 제90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기관이 수입하는 물품
3. 최근 2년간 「관세법」 위반(관세청장이 「관세법」 제270조·제276조 및 제277조에 따른 처벌을 받은 자로서 재범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 사실이 없는 수출입자 또는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를 받은 자로서 관세청장이 정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
4. 수출용원재료 등 수입물품의 성질, 반입사유 등을 고려할 때 관세채권의 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물품
5. 거주 이전(移轉)의 사유, 납부할 세액 등을 고려할 때 관세채권의 확보에 지장이 없다고 관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의 이사물품

▪ 위 2. 및 3.의 물품을 수입하는 자 중 관세 등의 체납, 불성실신고 등의 사유로 담보 제공을 생략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관세청장이 인정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256조제3항 단서).

> ※ 납세담보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세법」 제24조부터 제26조의2까지 또는 「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6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입신고 전의 물품 반출

▪ 수입하려는 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운송수단, 관세통로, 하역통로 또는 「관세법」에 따른 장치 장소로부터 즉시 반출하려는 자는 해당 물품의 품명·규격·수량 및 가격을 기재한 신고서를 제출하여 세관장에게 즉시반출신고를 해야 합니다(「관세법」 제253조제1항 전단 및 「관세법 시행령」 제257조제1항).

- 이 경우 세관장은 납부해야 하는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253조제1항 후단).

▪ 즉시반출을 할 수 있는 자 및 물품은 다음에 해당하는 것 중 「관세법」 제226조제2항에 따른 구비조건의 확인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서 세관장이 지정하는 것에 한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257조제2항).

- 관세 등의 체납이 없고 최근 3년 동안 수출입실적이 있는 제조업자 또는 외국인투자자가 수입하는 시설재 또는 원부자재
- 그 밖에 관세 등의 체납우려가 없는 경우

▪ 즉시반출신고를 하고 반출을 하는 자는 즉시반출신고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관세법」 제253조제3항).

- 반출을 한 자가 위의 기간 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징수하며, 이 경우 해당 물품에 대한 관세의 100분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징수하고, 즉시반출을 할 수 있는 자 또는 물품을 지정한 것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253조제4항).

※ 즉시반출신고 절차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제6장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통관 후 유통이력 신고

유통이력 신고

▪ 외국물품을 수입하는 자와 수입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자(소비자에 대한 판매를 주된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는 제외)는 사회안전 또는 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현저한 물품 등으로서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이하 “유통이력 신고물품”이라 함)에 대한 유통단계별 거래명세(이하 “유통이력”이라 함)를 관세청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관세법」 제240조의2제1항).

▪ 유통이력 신고의 의무가 있는 자는 유통이력을 장부에 기록(전자적 기록방식을 포함)하고, 그 자료를 거래일부터 1년간 보관해야 합니다(「관세법」 제240조의2제2항).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유통이력을 신고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 또는 장부기록 자료를 보관하지 않은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관세법」 제277조제5항제1호 및 제2호).

※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

1. 「관세법」에 따른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
   - 관련 고시: 「수입물품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 관련 홈페이지: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https://unipass.customs.go.kr)
2.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입농산물 등 유통이력관리
   - 관련 고시: 「수입농산물등 유통이력관리에 관한 고시」
   - 관련 홈페이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수입농산물유통이력관리시스템(https://pass.naqs.go.kr)
3.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입수산물 유통이력관리
   - 관련 고시: 「수입수산물 유통이력 관리에 관한 고시」
   - 관련 홈페이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수입수산물 유통이력시스템(https://www.nfqs.go.kr)

보세구역 반입명령

반입명령 사유

▪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수입신고가 수리되어 반출된 물품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화주(화주의 위임을 받은 자를 포함) 또는 수입 신고인에게 보세구역으로 반입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238조제1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245조제1항 본문).

- 「관세법」 제227조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관세법」 제230조에 따른 원산지 표시가 적법하게 표시되지 않았거나 수출입신고 수리 당시와 다르게 표시되어 있는 경우

- 「관세법」 제230조의2에 따른 품질 등의 표시(표지의 부착을 포함)가 적법하게 표시되지 않았거나 수출입신고 수리 당시와 다르게 표시되어 있는 경우
- 지식재산권 등을 침해한 경우

반입

▪ 위에 따른 반입명령을 받은 자(이하 “반입의무자”라 함)는 해당 물품을 지정받은 보세구역으로 반입해야 합니다(「관세법」 제238조제2항).

반출 또는 폐기

▪ 관세청장이나 세관장은 반입의무자에게 반입된 물품을 국외로 반출 또는 폐기할 것을 명하거나 반입의무자가 위반사항 등을 보완 또는 정정한 이후 국내로 반입하게 할 수 있고, 이 경우 반출 또는 폐기에 드는 비용은 반입의무자가 부담합니다(「관세법」 제238조제3항).

▪ 반입된 물품이 국외로 반출 또는 폐기되었을 때에는 당초의 수출입 신고 수리는 취소된 것으로 보고, 이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할 때 납부한 관세는 환급합니다(「관세법」 제238조제4항).

※ 위의 사항을 위반하여 보세구역 반입명령에 대해 반입대상 물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물품원가 또는 2천만원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관세법」 제276조제2항제3호).

2.2. 원산지 표시

2.2.1.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

수입물품의 원산지 표시

원산지 표시의무

▪ 산업통상부장관이 공정한 거래 질서의 확립과 생산자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대상으로 공고한 물품 등(이하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이라 함)을 수출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그 물품 등에 대해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대외무역법」 제33조제1항).

※ “물품 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

1. 물품: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지급수단, 증권, 채권을 화체(化體)한 서류를 제외한 동산(動産)
2. 용역(「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조)
   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용역(출판업과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을 포함)
   ② 지식기반용역 등 수출유망산업으로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조제3항에 따른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
   ③ 국내의 법령 또는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저작권·저작인접권·프로그램저작권·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의 양도(讓渡), 전용실시권(專用實施權)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의 허락
3.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대외무역법 시행령」 제4조)
   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② 부호·문자·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을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자료 또는 정보 등으로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4조에 해당하는 것

③ 위 ①과 ②의 집합체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 수입된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해 판매목적의 물품포장 활동, 상품성 유지를 위한 단순한 작업 활동 등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기에 부족한 가공활동을 거침으로써 해당 물품 등의 원산지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형한 자(무역거래자 또는 물품 등의 판매업자에 대해 「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는 그 단순 가공한 물품 등에 당초의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대외무역법」 제33조제2항 및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5조제2항).

※ 원산지표시대상물품 및 가공활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입 물품의 원산지 표시방법

▪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수입하려는 자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해야 합니다(「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제1항).

- 한글·한문 또는 영문으로 표시할 것
- 최종 구매자가 쉽게 판독할 수 있는 활자체로 표시할 것
- 식별하기 쉬운 위치에 표시할 것
- 표시된 원산지가 쉽게 지워지거나 떨어지지 않는 방법으로 표시할 것

▪ 해당 물품에 원산지를 표시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원산지를 표시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대외무역관리규정」 제75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산지를 표시하거나 원산지 표시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6조제2항).

※ 원산지표시대상물품 및 가공활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산지 표시방법의 확인 및 이의제기

▪ 원산지 표시방법에 따라 원산지를 표시해야 하는 자는 해당 물품이 수입되기 전에 문서로 그 물품의 적절한 원산지 표시방법에 관한 확인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 산업통상부장관의 원산지 표시방법의 확인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확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7조제2항).

▪ 산업통상부장관은 「대외무역법」 제33조제3항에 따라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수입하는 자에 대해 해당 물품이 통관할 때 원산지의 표시방법 및 표시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7조제4항 전단).

원산지 표시에 대한 금지행위

▪ 무역거래자는 수입 물품 등에 대해 다음에 해당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대외무역법」 제33조제4항).

1.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오인(誤認)하게 하는 표시를 하는 행위

2. 원산지의 표시를 손상하거나 변경하는 행위

3. 원산지표시대상물품에 대해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는 행위

4. 위 1.부터 3.에 위반되는 원산지표시대상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행위

원산지 표시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

시정조치

▪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위의 원산지 표시 규정을 위반한 자에게 다음과 같은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법」 제33조의2제1항 및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8조제1항).

- 원산지 표시의 원상 복구, 정정, 말소 또는 원산지 표시명령
- 위반물품의 거래 또는 판매 행위의 중지

▪ 위의 시정조치 명령은 다음의 사항을 명시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8조제2항).

- 위반행위의 내용
- 시정조치 명령의 사유 및 내용
- 시정기한

과징금 부과

▪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위의 원산지 표시 규정을 위반한 자(원산지 표시 위반 물품을 국내에서 거래하는 행위를 한 자는 제외)에게 3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법」 제33조의2제2항).

▪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과징금을 부과하려면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을 명시하여 과징금을 낼 것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9조제1항).

▪ 위에 따라 통보를 받은 자는 납부 통지일부터 20일 이내에 과징금을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정하는 수납기관에 내야 합니다(「대외무역법 시행령」 제59조제2항).

2.2.2. 수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

원산지 판정

원산지 판정 기준

▪ 산업통상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수입 물품 등의 원산지 판정을 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법」 제34조제1항).

> ※ “물품 등”이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합니다(「대외무역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
>
> 1. 물품: 「외국환거래법」에서 정하는 지급수단, 증권, 채권을 화체(化體)한 서류를 제외한 동산(動産)
> 2. 용역(「대외무역법 시행령」 제3조)
>
> ①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용역(출판업과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을 포함)
>
> ② 지식기반용역 등 수출유망산업으로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3조제3항에 따른 업종의 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제공하는 용역

③ 국내의 법령 또는 대한민국이 당사자인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저작권·저작인접권·프로그램저작권·반도체집적회로의 배치설계권의
양도(讓渡), 전용실시권(專用實施權)의 설정 또는 통상실시권(通常實施權)의 허락

3.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無體物)(「대외무역법 시행령」 제4조)

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프트웨어

② 부호·문자·음성·음향·이미지·영상 등을 디지털 방식으로 제작하거나 처리한 자료 또는 정보 등으로서
「대외무역관리규정」 제4조에 해당하는 것

③ 위 ①과 ②의 집합체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전자적 형태의 무체물로서 산업통상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

▪ 수입 물품에 대한 원산지 판정은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1조제1항).

▹ 수입 물품의 전부가 하나의 국가에서 채취되거나 생산된 물품(이하 “완전생산물품”이라 함)인 경우에는 그 국가를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할 것

▹ 수입 물품의 생산·제조·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가하여 그 물품에 본질적 특성을 부여하는 활동(이하 “실질적 변형”이라 함)을 한 국가를 그 물품의 원산지로 할 것

▹ 수입 물품의 생산·제조·가공 과정에 둘 이상의 국가가 관련된 경우 단순한 가공활동을 하는 국가를 원산지로 하지 않을 것

원산지 판정 요청

▪ 무역거래자는 수입 물품 등의 원산지 판정을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법」 제34조제3항).

원산지 판정절차

▪ 수입 물품의 원산지 판정을 받으려는 자는 대상 물품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관세법 시행령」 제98조에 따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를 말함)상의 품목번호·품목명(모델명을 포함), 요청 사유, 요청자가 주장하는 원산지 등을 명시한 요청서에 견본 1개와 그 밖에 원산지 판정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본문).

▹ 물품의 성질상 견본을 제출하기 곤란하거나 견본이 없어도 그 물품의 원산지 판정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견본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2조제1항 단서).

▪ 산업통상부장관은 제출된 요청서 등이 미비하여 수출 또는 수입 물품의 원산지를 판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자료의 보정(補正)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기간 내에 보정하지 않으면 요청서 등을 되돌려 보낼 수 있습니다(「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2조제2항).

▪ 산업통상부장관은 원산지 판정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원산지 판정을 하여 그 결과를 요청한 사람에게 문서로 알려야 합니다(「대외무역법」 제34조제4항 및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2조제3항).

원산지 판정에 대한 이의제기

▪ 통보를 받은 자가 원산지 판정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법」 제34조제5항).

▪ 원산지 판정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자는 대상 물품의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상의 품목번호·품목명(모델명을 포함), 이의제기 사유, 신청자가 주장하는 원산지 등을 명시한 이의신청서에 원산지 판정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 산업통상부장관은 원산지 판정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받은 경우에는 이의 제기를 받은 날부터 150일 이내에 이의 제기에 대한 결정을 알려야 합니다(「대외무역법」 제34조제6항).

원산지증명서 제출

수입 물품 등의 원산지증명서 제출

▪ 산업통상부장관은 원산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물품 등을 수입하려는 자에게 다음의 기관에서 발행하는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대외무역법」 제36조제1항 및 「대외무역법 시행령」 제65조제1항).

- 그 물품의 원산지 국가
- 그 물품을 선적(船積)한 국가의 정부
- 그 물품의 원산지 국가 또는 그 물품을 선적한 국가의 정부가 인정하는 기관

> ※ 원산지 확인 및 원산지증명서 등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대외무역관리규정」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관세

3.1. 관세 부과 및 신고 등

3.1.1. 관세 부과

관세 부과 대상 등

부과대상

▪ 수입하는 물품에는 관세를 부과합니다(「관세법」 제14조).

과세표준

▪ 관세의 과세표준은 수입물품의 가격 또는 수량으로 합니다(「관세법」 제15조).

과세물건 확정 시기

▪ 관세는 수입신고(입항 전 수입신고를 포함)를 하는 때의 물품의 성질과 그 수량에 따라 부과합니다(「관세법」 제16조 본문).

▪ 관세는 수입신고 당시의 법령에 따라 부과합니다(「관세법」 제17조 본문).

과세 환율

▪ 과세가격을 결정하는 경우 외국통화로 표시된 가격을 내국통화로 환산할 때에는 「관세법」 제17조에 따른 날(보세건설장에 반입된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한 날을 말함)이 속하는 주의 전주(前週)의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을 평균하여 관세청장이 그 율을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정합니다(「관세법」 제18조).

> ※ 과세환율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세 납세 의무

납세 의무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됩니다(「관세법」 제19조제1항).

> 1. 수입신고를 한 물품인 경우에는 그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화주가 불분명할 때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함)(다만,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 또는 「관세법」 제252조에 따른 수입신고 수리 전 반출승인을 받아 반출된 물품에 대해 납부하였거나 납부해야 할 관세액이 부족한 경우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의 주소 및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수입신고인이 화주를 명백히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그 신고인이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하는 때의 화주와 연대하여 해당 관세를 납부해야 함)
>
> ①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인 경우: 그 물품의 수입을 위탁한 자
>
> ② 수입을 위탁받아 수입업체가 대행수입한 물품이 아닌 경우: 「관세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상업서류에 적힌 물품수신인
>
> ③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전에 양도한 경우: 그 양수인
>
> 2. 「관세법」 제143조제6항(「관세법」 제151조제2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하역허가를 받은 자

3. 「관세법」 제158조제7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구역 밖에서 하는 보수작업을 승인받은 자
4. 「관세법」 제160조제2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운영인 또는 보관인
5. 「관세법」 제187조제7항(「관세법」 제195조제2항 또는 제202조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공장 외 작업, 보세건설장 외 작업 또는 종합보세구역 외 작업을 허가받거나 신고한 자
6. 「관세법」 제217조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보세운송을 신고하였거나 승인을 받은 자
7.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소비하거나 사용하는 물품(「관세법」 제239조에 따라 소비 또는 사용을 수입으로 보지 않는 물품은 제외)인 경우에는 그 소비자 또는 사용자
8. 「관세법」 제253조제4항에 따라 관세를 징수하는 물품인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즉시 반출한 자
9. 우편으로 수입되는 물품인 경우에는 그 수취인
10. 도난물품이나 분실물품인 경우에는 다음에 규정된 자
    ① 보세구역의 장치물품(藏置物品): 그 운영인 또는 「관세법」 제172조제2항에 따른 화물관리인
    ② 보세운송물품: 보세운송을 신고하거나 승인을 받은 자
    ③ 그 밖의 물품: 그 보관인 또는 취급인
11. 「관세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따로 납세의무자로 규정된 자
12. 위 1.부터 11.까지 외의 물품인 경우에는 그 소유자 또는 점유자

- 관세 또는 강제징수비를 납부해야 하는 의무는 다음에 해당되는 때에는 소멸합니다(「관세법」 제20조).
  - 관세를 납부하거나 관세에 충당한 때
  - 관세부과가 취소된 때
  -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에 관세가 부과되지 않고 그 기간이 만료된 때
  - 관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때

관세부과 제척기간 및 징수권

관세부과 제척기간

- 관세는 해당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습니다(「관세법」 제21조제1항 본문).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각 구분에 따라 정하는 기간이 지나면 부과할 수 없습니다(「관세법」 제21조제1항 단서).
  -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경우(「관세법」 제16조제1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른 물품은 제외): 7년
  -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하였거나 환급 또는 감면받은 경우: 10년

관세 징수권

- 관세의 징수권은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관세법」 제22조제1항).

1. 5억원 이상의 관세(내국세를 포함): 10년

2. 위 1. 외의 관세: 5년

▪ 납세자가 납부한 금액 중 잘못 납부하거나 초과하여 납부한 금액 또는 그 밖의 관세의 환급청구권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됩니다(「관세법」 제22조제2항).

3.1.2. 과세가격의 신고

수입신고 시 가격신고

가격신고 시기

▪ 관세의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 세관장에게 해당 물품의 가격에 대한 신고(이하 “가격신고”라 함)를 해야 합니다(「관세법」 제27조제1항 본문).

▪ 다만, 통관의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의 수입신고를 하기 전에 가격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27조제1항 단서).

가격신고 시 제출서류

▪ 가격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 수입관련거래에 관한 사항
- 과세가격산출내용에 관한 사항

▪ 가격신고를 할 때에는 다음과 같은 과세가격의 결정과 관계되는 자료(이하 “과세가격결정자료”라 함)를 제출해야 합니다(「관세법」 제27조제2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15조제5항).

1. 송품장
2. 수입물품 구매계약서
3. 「관세법」 제30조제1항 각 호의 금액에 관한 계약서
4. 「관세법」 제3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다음의 금액에 관한 계약서
   ①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相計)하는 금액
   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③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
5. 「관세법」 제30조제2항 각 호의 금액에 관한 계약서(「관세법」 제30조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납부고지서나 그 밖의 증빙자료
6. 각종 비용의 금액 및 산출근거를 나타내는 증빙자료
7.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가 있는 경우 「관세법 시행령」 제31조의5제1항제3호에 따른 수입물품 가격산출 내역 등 내부가격 결정자료
8. 그 밖에 가격신고의 내용을 입증하는 데에 필요한 자료

가격신고의 생략

▪ 다음의 물품에 대해서는 가격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
- 정부조달물품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수입하는 물품
- 관세 및 내국세 등이 부과되지 않는 물품
- 방위산업용 기계와 그 부분품 및 원재료로 수입하는 물품(다만, 해당 물품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수입확인 또는 수입추천을 받은 물품에 한정)
- 수출용 원재료
-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이 수입하는 물품
- 과세가격이 미화 1만불 이하인 물품(다만,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에너지·환경세가 부과되는 물품과 분할하여 수입되는 물품은 제외)
- 종량세 적용물품(종량세와 종가세 중 높은 세액 또는 높은 세율을 선택하여 적용해야 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제외)
- 「관세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결과가 통보된 물품(다만, 「관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각 호의 물품은 제외)

> ※ 포괄가격신고
>
> Q. 작년에 수입했던 물품을 똑같은 조건으로 수입하려고 합니다. 수입을 할 때마다 매번 가격신고를 해야 하나요?
>
> A. 같은 판매자와 구매자가 같은 조건으로 물품을 반복적으로 수입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일정기간 동안의 수입물품에 대해 포괄하여 가격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제2항제1호 및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제5조제1항 본문).

잠정가격신고

잠정가격신고 대상

▪ 납세의무자는 가격신고를 할 때 신고해야 할 가격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28조제1항 전단 및 「관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

- 거래관행상 거래가 성립된 때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가격이 정해지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의 물품으로 한정)으로서 수입신고일 현재 그 가격이 정해지지 않은 경우
- 「관세법」 제30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조정해야 할 금액이 수입신고일부터 일정기간이 지난 후에 정해질 수 있음이 과세결정자료 등으로 확인되는 경우
- 「관세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
-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관계가 있는 구매자와 판매자 사이의 거래 중 「관세법」 제30조제1항 본문에 따른 수입물품의 거래가격이 수입신고 수리 이후에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정상가격으로 조정될 것으로 예상되는 거래로서 「관세법 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경우
- 계약의 내용이나 거래의 특성상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관세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에 따른 경우

잠정가격신고 제출서류

▪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신고서에 과세가격결정자료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16조제2항).

- 「관세법 시행령」 제15조제1항 각 호의 사항
- 거래내용
- 가격을 확정할 수 없는 사유
- 잠정가격 및 잠정가격의 결정방법
- 가격확정예정시기

확정가격신고

▪ 납세의무자는 잠정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2년의 범위 안에서 구매자와 판매자 간의 거래계약의 내용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지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물품의 확정된 가격(이하 “확정가격”이라 함)을 세관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관세법」 제28조제2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16조제3항).

▪ 확정가격을 신고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이 적힌 신고서에 위의 과세가격결정자료 중 3.부터 9.까지의 자료를 첨부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16조제5항).

- 잠정가격신고번호 또는 수입신고번호와 신고일자
- 품명 및 수입신고수리일자
- 잠정가격 및 확정가격과 그 차액

> ※ 가격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1.3. 과세가격 결정

과세가격 결정방법

제1방법

▪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대해 다음과 같이 조정한 거래가격으로 합니다(「관세법」 제30조제1항 본문 및 제2항 참조).

> 과세가격 =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 + 가산요소 — 공제요소

1.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했거나 지급해야 할 가격(「관세법」 제30조제2항 본문).

√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해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①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와 판매자의 채무를 상계(相計)하는 금액, ② 구매자가 판매자의 채무를 변제하는 금액, ③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 포함

2. 가산요소(「관세법」 제30조제1항 각 호)

① 구매자가 부담하는 수수료와 중개료(구매수수료는 제외)

② 해당 수입물품과 동일체로 취급되는 용기의 비용과 해당 수입물품의 포장에 드는 노무비와 자재비로서 구매자가 부담하는 비용

③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의 생산 및 수출거래를 위하여 「관세법 시행령」 제18조에 따른 물품 및 용역을 무료 또는 인하된 가격으로 직접 또는 간접으로 공급한 경우에는 그 물품 및 용역의 가격 또는 인하차액을 해당 수입물품의 총생산량 등 「관세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른 요소를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한 금액

④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하는 대가로 지급하는 것으로서 「관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

⑤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한 후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금액 중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금액

⑥ 수입항(輸入港)까지의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으로서 「관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결정된 금액(「관세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수입물품의 경우에는 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외)

3. 공제요소(「관세법」 제30조제2항 단서).

① 수입 후에 하는 해당 수입물품의 건설, 설치, 조립, 정비, 유지 또는 해당 수입물품에 관한 기술지원에 필요한 비용

② 수입항에 도착한 후 해당 수입물품을 운송하는 데에 필요한 운임·보험료와 그 밖에 운송과 관련되는 비용

③ 우리나라에서 해당 수입물품에 부과된 관세 등의 세금과 그 밖의 공과금

④ 연불조건(延拂條件)의 수입인 경우에는 해당 수입물품에 대한 연불이자

▪ 위의 가산요소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할 때에는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에 근거해야 합니다(「관세법」 제30조제1항 단서).

▪ 세관장은 납세의무자가 위에 따른 거래가격으로 가격신고를 한 경우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세가격으로 인정하기 곤란한 경우 납세의무자에게 신고가격이 사실과 같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30조제4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

▹ 납세의무자가 신고한 가격이 동종·동질물품 또는 유사물품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 납세의무자가 동일한 공급자로부터 계속해 수입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고한 가격에 현저한 변동이 있는 경우

▹ 신고한 물품이 원유·광석·곡물 등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는 물품인 경우 신고한 가격이 그 국제거래시세와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 신고한 물품이 원유·광석·곡물 등으로서 국제거래시세가 공표되지 않는 물품인 경우 관세청장 또는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자가 조사한 수입물품의 산지 조사가격이 있는 때에는 신고한 가격이 그 조사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 납세의무자가 거래처를 변경한 경우로서 신고한 가격이 종전의 가격과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

제2방법 ~ 제6방법

▪ 위의 가산요소에 해당하는 금액을 더할 때에 객관적이고 수량화할 수 있는 자료가 없거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에 따른 거래가격을 해당 물품의 과세가격으로 하지 않고 제1방법 외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합니다(「관세법」 제30조제1항 단서 및 제3항 전단).

- 해당 물품의 처분 또는 사용에 제한이 있는 경우(다만, 「관세법 시행령」 제22조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해당 물품에 대한 거래의 성립 또는 가격의 결정이 금액으로 계산할 수 없는 조건 또는 사정에 따라 영향을 받은 경우
- 해당 물품을 수입한 후에 전매·처분 또는 사용하여 생긴 수익의 일부가 판매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귀속되는 경우(다만, 제1방법에 따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 구매자와 판매자 간에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해당하는 특수관계가 있어 그 특수관계가 해당 물품의 가격에 영향을 미친 경우(다만,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 제2방법부터 제6방법까지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2방법: 동종·동질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 방법(「관세법」 제31조)
- 제3방법: 유사물품의 거래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 방법(「관세법」 제32조)
- 제4방법: 국내판매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 방법(「관세법」 제33조)
- 제5방법: 산정가격을 기초로 한 과세가격 결정 방법(「관세법」 제34조)
- 제6방법: 합리적 기준에 의한 과세가격 결정 방법(「관세법」 제35조)

> ※ 제2방법부터 제6방법까지의 과세가격 결정방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세법」 제31조부터 제35조까지 또는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 홈페이지(https://www.customs.go.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

과세가격 사전심사 신청

▪ 납세신고를 해야 하는 자는 과세가격 결정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항에 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가격신고를 하기 전에 관세청장에게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37조제1항).

- 「관세법」 제3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항
- 「관세법」 제30조에 따른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되는 과세가격 결정방법
- 특수관계가 있는 자들 간에 거래되는 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과세가격 사전심사 신청 시 제출서류

▪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사전심사를 신청하려는 자는 거래당사자·통관예정세관·신청내용 등을 적은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31조제1항).

- 거래관계에 관한 기본계약서(투자계약서·대리점계약서·기술용역계약서·기술도입계약서 등)
- 수입물품과 관련된 사업계획서
- 수입물품공급계약서
- 수입물품가격결정의 근거자료

- 「관세법」 제37조제1항제3호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시행규칙」 제7조의10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서류
- 그 밖에 과세가격결정에 필요한 참고자료

과세가격 사전심사 결과 통보 및 이의제기

▪ 위에 따른 신청을 받은 관세청장은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을 심사한 후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합니다(「관세법」 제37조제2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31조제3항).

- 「관세법」 제37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 1개월
- 「관세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 1년

▪ 위에 따라 결과를 통보받은 자가 그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재심사 신청의 요지와 내용이 기재된 신청서에 다음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관세청장에게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37조제3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31조제4항).

- 「관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서 사본
- 재심사 신청의 요지와 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과세가격 결정

▪ 세관장은 관세의 납세의무자가 위에 따라 통보된 과세가격의 결정방법에 따라 납세신고를 한 경우 다음의 요건을 갖추었을 때에는 그 결정방법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해야 합니다(「관세법」 제37조제4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31조제7항).

- 「관세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신청인과 납세의무자가 동일할 것
- 과세가격 사전심사 신청 시 제출된 내용에 거짓이 없고 그 내용이 가격신고된 내용과 같을 것
- 사전심사의 기초가 되는 법령이나 거래관계 등이 달라지지 않았을 것
- 다음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신고할 것

√ 「관세법」 제37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 「관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결과의 통보일부터 3년

√ 「관세법」 제37조제1항제3호에 따라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를 신청한 경우: 다음 ①부터 ②까지의 기간

① 「관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결과의 통보일

② 「관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결과의 통보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말일(다만, 「관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통보일 기준으로 2년 이후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말일이 도래하기 30일 전까지 신고기간을 2년 연장하여 줄 것을 신청한 경우로서 관세청장이 이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말일로 함)

> ※ 과세가격 사전심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세평가 운영에 관한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3.2. 관세 납부

3.2.1. 납세신고 및 납부

납세신고

관세 납부에 관한 신고

▪ 물품(「관세법」 제39조에 따라 세관장이 부과고지하는 물품은 제외)을 수입하려는 자는 수입신고를 할 때에 세관장에게 관세의 납부에 관한 신고(이하 “납세신고”라 함)를 해야 합니다(「관세법」 제38조제1항).

납세신고사항

▪ 납세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수입신고서에 다음의 사항을 기재하여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32조제1항).

- 해당 물품의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세율과 품목분류마다 납부해야 할 세액 및 그 합계액
- 「관세법」, 그 밖의 관세에 관한 법률 또는 조약에 따라 관세의 감면을 받는 경우에는 그 감면액과 법적 근거
- 「관세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그 내용
- 그 밖에 과세가격결정에 참고가 되는 사항

세액 정정

▪ 납세의무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납부하기 전에 그 세액이 과부족(過不足)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납세신고한 세액을 정정할 수 있고, 이 경우 납부기한은 당초의 납부기한(「관세법」 제9조에 따른 납부기한)으로 합니다(「관세법」 제38조제5항).

> ※ 납세신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세액심사

납세신고에 대한 사후심사

▪ 세관장은 납세신고를 받으면 수입신고서에 기재된 사항과 「관세법」에 따른 확인사항 등을 심사하되, 신고한 세액 등 납세신고 내용에 대한 심사(이하 “세액심사”라 함)는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에 합니다(「관세법」 제38조제2항 본문).

수입신고 수리 전 세액심사

▪ 신고한 세액에 대해 관세채권을 확보하기가 곤란하거나, 수입신고를 수리한 후 세액심사를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다음과 같은 물품의 경우에는 수입신고를 수리하기 전에 이를 심사합니다(「관세법」 제38조제2항 단서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 법률 또는 조약에 따라 관세 또는 내국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물품
- 「관세법」 제107조에 따라 관세를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물품
- 관세를 체납하고 있는 자가 신고하는 물품(체납액이 10만원 미만이거나 체납기간 7일 이내에 수입신고하는 경우를 제외)

- 납세자의 성실성 등을 참작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불성실신고인이 신고하는 물품
- 물품의 가격변동이 큰 물품, 그 밖에 수입신고 수리 후에 세액을 심사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물품

부과고지

부과·징수 사유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신고 규정(「관세법」 제38조)에도 불구하고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합니다(「관세법」 제39조제1항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9조).
  - 「관세법」 제16조제1호부터 제6호까지 및 제8호부터 제11호까지에 해당되어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 보세건설장에서 건설된 시설로서 「관세법」 제248조에 따라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가동된 경우
  - 보세구역(「관세법」 제156조제1항에 따라 보세구역 외 장치를 허가받은 장소를 포함)에 반입된 물품이 「관세법」 제248조제3항을 위반하여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반출된 경우
  - 납세의무자가 관세청장이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16조제2항에 따른 사유로 과세가격이나 관세율 등을 결정하기 곤란하여 부과고지를 요청하는 경우
  - 「관세법」 제253조에 따라 즉시 반출한 물품을 10일(「관세법」 제253조제3항) 이내에 수입신고를 하지 않아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 여행자 또는 승무원의 휴대품 및 별송품
  - 우편물(「관세법」 제258조제2항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
  - 법령의 규정에 따라 세관장이 관세를 부과·징수하는 물품
  - 납세신고가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관세청장이 지정하는 물품

납부고지

- 세관장은 관세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세목·세액·납부장소 등을 기재한 납부고지서를 납세의무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관세법」 제39조제3항 및 「관세법 시행령」 제36조 본문).

> ※ 부과고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관세의 납부

관세의 납부기한

- 관세의 납부기한은 「관세법」에서 달리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구분에 따릅니다(「관세법」 제9조제1항).
  - 「관세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납세신고를 한 경우: 납세신고 수리일부터 15일 이내
  - 「관세법」 제39조제3항에 따른 납부고지를 한 경우: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 「관세법」 제253조제1항에 따른 수입신고 전 즉시반출신고를 한 경우: 수입신고일부터 15일 이내
- 납세의무자는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해당 세액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9조제2항).

월별납부

▪ 세관장은 납세실적 등을 고려하여 관세청장이 정하는 요건을 갖춘 성실납세자는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에 대해서는 그 기한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한꺼번에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9조제3항 전단).

▪ 납부기한이 동일한 달에 속하는 세액을 월별로 일괄하여 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납세실적 및 수출입실적에 관한 서류 등 관세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세관장에게 월별납부의 승인을 신청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1조의5제1항).

관세 분할납부

분할납부 신청

▪ 세관장은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사유로 「관세법」에 따른 신고, 신청, 청구, 그 밖의 서류의 제출, 통지, 납부 또는 징수를 정해진 기한까지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1년을 넘지 않는 기간을 정하여 관세를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107조제1항).

▪ 관세를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를 납부기한 내에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125조제1항).

- 납세의무자의 성명·주소 및 상호
- 분할납부를 하고자 하는 세액 및 당해 물품의 신고일자·신고번호·품명·규격·수량·가격
- 분할납부하고자 하는 사유 및 기간
- 분할납부금액 및 횟수

▪ 관세의 분할납부 승인을 얻고자 하는 자는 해당 물품의 수입신고 시부터 수입신고 수리 전까지 그 물품의 품명·규격·수량·가격·용도·사용장소와 사업의 종류를 기재한 신청서를 세관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관세법 시행령」 제126조).

분할납부 승인

▪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세관장은 5년을 넘지 않는 기간을 정하여 관세의 분할납부를 승인할 수 있습니다(「관세법」 제107조제2항).

- 시설기계류, 기초설비품, 건설용 재료 및 그 구조물과 공사용 장비로서 「관세법 시행규칙」 제59조제1항에 따른 요건을 갖춘 물품
-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4 제1호에 따른 물품
- 학교나 직업훈련원에서 수입하는 물품과 비영리법인이 공익사업을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4 제2호에 따른 물품
-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4 제3호에 따른 의료기관, 사회복지기관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
- 「관세법 시행규칙」 별표 4 제4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산업기술연구조합 및 비영리법인인 연구기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연구기관에서 수입하는 기술개발연구용품 및 실험실습용품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
- 「관세법 시행규칙」 제59조제3항에 따른 중소제조업체가 직접 사용하려고 수입하는 물품(다만, 「관세법 시행규칙」 제59조제4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물품이어야 함)

「관세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기업부설 직업훈련원에서 직업훈련에 직접 사용하려고 수입하는 교육용품 및 실험실습용품 중 국내에서 제작하기가 곤란한 물품으로서 재정경제부장관이 고시하는 물품

3.2.2. 관세 감면 및 환급

관세 면제

면세 사유

▪ 다음의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가 면제됩니다.

면세 종류	면세 사유
외교관용 물품 등의 면세 (「관세법」 제88조제1항)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공사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용품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외국의 대사·공사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절과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영사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업무용품 우리나라에 있는 외국의 대사관·공사관·영사관 및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기관의 직원 중 「관세법 시행령」 제108조에 따른 직원과 그 가족이 사용하는 물품 정부와 체결한 사업계약을 수행하기 위하여 외국계약자가 계약조건에 따라 수입하는 업무용품 국제기구 또는 외국 정부로부터 우리나라 정부에 파견된 고문관·기술단원 및 그 밖에 「관세법 시행규칙」 제34조제2항에 따른 자가 사용하는 물품
세율불균형물품의 면세 (「관세법」 제89조제1항)	항공기(부분품을 포함) 반도체 제조용 장비(부속기기를 포함)
종교 용품, 자선 용품, 장애인 용품 등의 면세 (「관세법」 제91조)	교회, 사원 등 종교단체의 의식(儀式)에 사용되는 물품으로서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 제39조제1항에 따른 물품은 제외) 자선 또는 구호의 목적으로 기증되는 물품 및 「관세법 시행규칙」 제39조제2항에 따른 자선시설·구호시설 또는 사회복지시설에 기증되는 물품으로서 해당 용도로 직접 사용하는 물품(「관세법 시행규칙」 제39조제3항에 따른 물품은 제외) 국제적십자사·외국적십자사 및 「관세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국제기구가 국제평화봉사활동 또는 국제친선활동을 위하여 기증하는 물품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언어장애인, 지체장애인, 만성신부전증환자, 희귀난치성질환자 등을 위한 용도로 특수하게 제작되거나 제조된 물품 중 「관세법 시행규칙」 제39조제4항에 따른 물품 「약사법」 제91조에 따른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수입하는 희귀난치성질환 치료용 의약품 중 「관세법 시행규칙」 제39조제5항으로 정하는 의약품 「장애인복지법」 제58조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 및 장애인의 재활의료를 목적으로 국가·지방자치단체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재활 병원·의원에서 장애인을 진단하고 치료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의료용구

정부용품 등의 면세 (「관세법」 제92조)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 기증된 물품으로서 공용으로 사용하는 물품(다만, 「관세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른 물품은 제외) 정부가 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군수품(정부의 위탁을 받아 정부 외의 자가 수입하는 경우를 포함)(다만, 「관세법 시행규칙」 제41조제2항에 따른 물품은 제외) 국가원수의 경호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 외국에 주둔하는 국군이나 재외공관으로부터 반환된 공용품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국가의 안전보장을 위하여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비상통신용 물품 및 전파관리용 물품 정부가 직접 수입하는 간행물, 음반, 녹음된 테이프, 녹화된 슬라이드, 촬영된 필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 및 자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들이 설립하였거나 출연 또는 출자한 법인을 포함)가 환경오염(소음 및 진동을 포함)을 측정하거나 분석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기계·기구 중 「관세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른 물품 상수도 수질을 측정하거나 이를 보전·향상하기 위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이들이 설립하였거나 출연 또는 출자한 법인을 포함)가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관세법 시행규칙」 제41조제3항에 따른 물품 국가정보원장 또는 그 위임을 받은 자가 국가의 안전보장 목적의 수행상 긴요하다고 인정하여 수입하는 물품

특정 물품의 면세 등 (「관세법」 제93조)	1. 동식물의 번식·양식 및 종자개량을 위한 물품 중 「관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1항에 따른 물품 2. 박람회, 국제경기대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사 중 「관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른 행사에 사용하기 위하여 그 행사에 참가하는 자가 수입하는 물품 중 「관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에 따른 물품 3. 핵사고 또는 방사능 긴급사태 시 그 복구지원과 구호를 목적으로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으로서 「관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4항에 따른 물품 4.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 외국의 영해에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이를 원료로 하여 우리나라 선박에서 제조하거나 가공한 것을 포함) 5. 우리나라 선박이 외국의 선박과 협력하여 「관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5항에 따른 방법으로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추천하는 것 6. 해양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자가 「관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6항에 따른 요건에 적합하게 외국인과 합작하여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 중 해양수산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추천하는 것 7. 우리나라 선박 등이 채집하거나 포획한 수산물과 위 5. 및 6.에 따른 수산물의 포장에 사용된 물품으로서 재사용이 불가능한 것 중 「관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7항에 따른 물품 8.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해외구매자의 주문에 따라 제작한 기계·기구가 해당 구매자가 요구한 규격 및 성능에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하는 시험생산에 필요한 원재료로서 「관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8항에 따른 물품 9.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의 원수와 그 가족 및 수행원의 물품 10. 우리나라의 선박이나 그 밖의 운송수단이 조난으로 인하여 해체된 경우 그 해체재(解體材) 및 장비 11. 우리나라와 외국 간에 건설될 교량, 통신시설, 해저통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시설의 건설 또는 수리에 필요한 물품 12. 우리나라 수출물품의 품질, 규격, 안전도 등이 수입국의 권한 있는 기관이 정하는 조건에 적합한 것임을 표시하는 수출물품에 붙이는 증표로서 「관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9항에 따른 증표 13. 우리나라의 선박이나 항공기가 해외에서 사고로 발생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외국의 보험회사 또는 외국의 가해자의 부담으로 하는 수리 부분에 해당하는 물품 14. 우리나라의 선박이나 항공기가 매매계약상의 하자보수 보증기간 중에 외국에서 발생한 고장에 대해 외국의 매도인의 부담으로 하는 수리 부분에 해당하는 물품 15. 국제올림픽·장애인올림픽·농아인올림픽 및 아시아운동경기·장애인아시아운동경기 종목에 해당하는 운동용구(부분품을 포함)로서 「관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10항에 따른 물품 16. 국립묘지의 건설·유지 또는 장식을 위한 자재와 국립묘지에 안장되는 자의 관·유골함 및 장례용 물품 17.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국내에 주소를 둔 자에게 상속되는 피상속인의 신변용품 18. 보석의 원석(原石) 및 나석(裸石)으로서 「관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11항에 따른 것 19. 「해외자원개발 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해외자원개발사업자가 해외자원개발을 통하여 확보한 자원 중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핵심광물로서 「관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12항으로 정하는 것

소액물품 등의 면세 (「관세법」 제94조)	우리나라의 거주자에게 수여된 훈장·기장(紀章) 또는 이에 준하는 표창장 및 상패 기록문서 또는 그 밖의 서류 상업용견본품 또는 광고 용품으로서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제1항에 따른 물품 우리나라 거주자가 받는 소액물품으로서 「관세법 시행규칙」 제45조제2항에 따른 물품
재수입면세 (「관세법」 제99조)	우리나라에서 수출(보세가공수출을 포함)된 물품으로서 해외에서 제조·가공·수리 또는 사용(「관세법 시행규칙」 제54조제1항에 따른 물품의 경우는 제외)되지 않고 수출신고 수리일부터 2년 내에 다시 수입되는 물품(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세를 면제하지 않음) √ 해당 물품 또는 원자재에 대해 관세를 감면받은 경우 √ 「관세법」 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은 경우 √ 「관세법」 또는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 외의 자가 해당 물품을 재수입하는 경우(다만, 재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자가 환급받을 권리를 포기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재수입하는 자가 세관장에게 제출하는 경우는 제외) √ 보세가공 또는 장치기간경과물품을 재수출조건으로 매각함에 따라 관세가 부과되지 않은 경우 수출물품의 용기로서 다시 수입하는 물품 해외시험 및 연구를 목적으로 수출된 후 재수입되는 물품

관세 감면

감면 사유

▪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이 수입될 때에는 그 관세가 감면됩니다.

감면 종류	감면 사유
학술연구용품의 감면 (「관세법」 제90조제1항)	1.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관세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기관에서 사용할 학술연구용품·교육용품 및 실험실습용품으로서 「관세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른 물품 2. 학교, 공공의료기관, 공공직업훈련원, 박물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관세법 시행규칙」 제37조제2항에 따른 기관에서 학술연구용·교육용·훈련용·실험실습용 및 과학기술연구용으로 사용할 물품 중 「관세법 시행규칙」 제37조제1항에 따른 물품 3. 위 2.의 기관에서 사용할 학술연구용품·교육용품·훈련용품·실험실습용품 및 과학기술연구용품으로서 외국으로부터 기증되는 물품. 4. 「관세법 시행규칙」 제37조제3항에 따른 자가 산업기술의 연구개발에 사용하기 위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관세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른 물품
환경오염 방지물품 등에 대한 감면 (「관세법」 제95조제1항)	오염물질(소음 및 진동을 포함)의 배출 방지 또는 처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기구·시설·장비로서 「관세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 폐기물 처리(재활용을 포함)를 위하여 사용하는 기계·기구로서 「관세법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것 기계·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 자동화 기계·기구·설비(그 구성기기를 포함) 및 그 핵심부분품으로서 「관세법 시행규칙」 제46조제2항에 따른 물품
여행자 휴대품 및 이사물품 등의 감면 (「관세법」 제96조제1항)	여행자의 휴대품 또는 별송품으로서 여행자의 입국 사유, 체재기간, 직업,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우리나라로 거주를 이전하기 위하여 입국하는 자가 입국할 때 수입하는 이사물품으로서 거주 이전의 사유, 거주기간, 직업, 가족 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2의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국제무역선 또는 국제무역기의 승무원이 휴대하여 수입하는 물품으로서 항행일수, 체재기간,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관세법 시행규칙」 제48조의3의 기준에 따라 세관장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물품
손상 물품에 대한 감면 (「관세법」 제100조제1항)	수입신고한 물품이 수입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변질되거나 손상되었을 때에는 「관세법 시행령」 제118조에 따라 그 관세를 경감할 수 있음.
해외 임가공 물품 등의 감면 (「관세법」 제101조제1항)	원재료 또는 부분품을 수출하여 「관세법 시행규칙」 제56조제1항에 따른 물품으로 제조하거나 가공한 물품 가공 또는 수리할 목적으로 수출한 물품으로서 「관세법 시행규칙」 제56조제2항에 따른 물품

관세 환급

환급 사유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관세를 환급합니다(「관세법」 제106조 및 제106조의2).

환급 종류	환급 사유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관세법」 제106조제1항)	외국으로부터 수입된 물품: 다음에 해당하는 장소에 해당 물품을 반입(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반입한 경우로 한정)하였다가 다시 수출한 경우 가. 보세구역(「관세법」 제156조제1항에 따라 세관장의 허가를 받았을 때에는 그 허가받은 장소를 포함) 나. 자유무역지역 중 관세청장이 수출물품을 일정기간 보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장소 다. 통관우체국 보세공장에서 생산된 물품: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1년 이내에 보세공장에 해당 물품을 다시 반입한 경우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관세법」 제106조의2 제1항)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보세구역 또는 자유무역지역 중 관세청장이 수출물품을 일정기간 보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유무역지역 반출입물품의 관리에 관한 고시」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장소에 반입하였다가 다시 수출하는 경우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세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 제87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다시 수출하는 경우 「관세법」 제241조제2항에 따라 수출신고가 생략되는 탁송품 또는 우편물로서 「관세법 시행규칙」 제58조의2에 따른 금액 이하인 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출한 후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